

W 기본 소득, 복지 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일시 2020년 7월 21일 (화) 오후 2시

공동주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국회의원 **김 상 훈**

후원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 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차 | INDEX

【축 사】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 6
【주 제】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주제발표 I】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 9
【토 론 문】	오 건 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 21
【주제발표 II】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 27
【토 론 문】	윤 홍 식 교 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 41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 49
【부 록】	본 연구회 소개	... 53

프로그램 | Program

1 부

사회 : 조 중 근 회 장
사)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 1) 개회선언
- 2) 국민의례
- 3) 개 회 사.....김 상 훈 국회의원
- 4) 축 사차 흥 봉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 대표이사/
前 보건복지부 장관
- 5) 격 려 사.....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 6) 단체기념사진.....모든 참석자

2 부

사회 : 이 정 숙 회 장
사)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주제발표 I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홍 경 준 교 수(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 토 론오 건 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주제발표 II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양 재 진 교 수(연세대학교 행정학과 /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 토 론.....윤 흥 식 교 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 참관자 질의/응답

○ 총 마무리 발언

축 사

오늘 존경하는 국회 김상훈 의원님과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주최하는 기본소득제에 관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기본소득제가 근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하여 경쟁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정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보편적, 무조건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소득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그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격심한 경쟁과 부의 불평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유안정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는 제도 자체로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 존재양식은 일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그것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인데 이 제도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일을 하지 않고도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41년 전 1979년 한국 사람이 거의 가보지 못한 구소련을 여행하면서 한 달간 공산주의체제의 밑바닥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집단농장에 가보았더니 모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 곡식의 열매는 부실하고 잡초만 무성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체제가 무너지게 된 것이지요. 무조건적으로 소득을 보장하면 근로의욕의 상실을 초래하고 성장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려면 아주 큰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GDP의 10%, 20%인 200조, 300조원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류사회에서 지금까지 발달해온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은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약 150년 전 독일 비스마르크 시대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20세기이후에는 많은 선진국들이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며 복지국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빈곤, 질병, 실업, 재해, 노령, 사망 등 생애과정의 사회적 위험(social contingency)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는 ‘인류가 만들어낸 차선’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제는 지금까지 인류사회에서 한 번도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서 이 제도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인류의 최선’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특히 기본소득제가 사회보험방식의 사회안전망인 보편적 의료보험,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대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60년간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서구에서 발달해온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지금 복지국가로 가는 길의 7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완성하여 21세기 중반까지 선진복지국가로 발전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 물론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 기본소득제는 기존사회보장제도의 대체형(substitution model)이 아닌 보완형(complementarity model)으로 사회안전망의 기초를 보강하는 형태로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현재 일자리유형이 바뀌고 고용 및 소득형태가 크게 변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기본소득제의 보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제에 관하여 전문가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제도의 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답을 내려 주시고, 나아가 우리나라 국가복지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발표자, 토론자 모두에게 감사인사 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0. 07. 21.

차 흥 봉 前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발 표 I]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 가지 이유

홍 경 준 교 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

(사)좋은나라연구원 이사장 겸 원장

(재)바른미래연구원 원장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세계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BIEN(BasicIncome Earth Network)는 기본소득을 ‘자산조사와 근로에 대한 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 교부되는 주기적 현금’으로 정의한다.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확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판 파레이스(VanPaijs) 또한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주기적 현금급여’라고 규정한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러한 개념정의에 기초한다면, 기본소득의 속성은 일곱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첫째, 적용대상의 보편성이다. 기본소득은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회구성원을 포괄한다. 둘째, 급여자격의 무조건성이다. 사회보장제도가 빈곤이나 사회위험의 발생, 혹은 사회적 욕구의 충족여부를 조건으로 급여자격을 부여하는데 반해 기본소득제는 급여의 자격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조건을 두지 않는다. 셋째, 개별성이다. 급여단위가 가족이나 가구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것이다. 넷째, 정기성이다. 체로 ‘월’ 단위의 급여를 의미하지만, 주, 분기, 반기, 년 단위도 가능하다. 다섯째, 현금 지급이다. 소비자주권주의를 통한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현금 지급이나 서비스 제공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본소득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어떤 정치적 공동체 단위에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곱째, 충분성이다.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하게 지급한다.

사실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여러 논의를 한번쯤 들어본 사람이라면, 지금 기에서 나열한 기본소득제의 일곱 가지-쓰는 이에 따라 여섯 가지, 혹은 셋 가지-속성들은 익히 들어왔을 법하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의 상당수는 이러한 속성들을 기준으로 하여 ‘진짜’ 기본소득제와 ‘짜퉁’ 기본소득제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 글에서 그런 논란을 뒤풀이할 생각은 없다. 더 나아가 나는 ‘짜퉁’ 기본소득제는 반대하지만, ‘진짜’ 기본소득제는 찬성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제시할 생각도 없다. 이 글에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짜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진짜’ 기본소득제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내가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Too Old; 기본소득제는 새롭지 않다.

실행되었을 때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기본소득제는 상당히 오래된 것임에 틀림없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는 16세기 초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Thomas More)와 인문주의자 비베스(Johannes Vives)의 ‘최소 소득’이라는 개념에서 처음 등장했다. 이후 18세기 말 무렵 수학자이자 사상가였던 콩도르세(Marquis de Condorcet)가 기본증여라는 아이디어를 언급하였고, 그의 가까운 친구인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좀 더 상세하게 발전시켰다. 조건 없는 급여라는 기본소득의 핵심적 특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19세기 초에 등장한다. 조셉 샤를리에(Joseph Charlier)는 ‘토지 배당’이란 이름으로 전체 부동산의 임대료 일부를 모든 시민들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건 없이 주자고 제안했고,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도 <정치경제학의 원리> 2판에서 생산물의 일부는 노동을 할 수 있든 없든 상관없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생계를 위해 먼저 할당된다는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물론 기본소득제의 최초 아이디어가 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제가 새롭지 않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 때문이다.

이름이 다는 아니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는 기본소득제의 전면화는 미래의 과제이기 때문에 부분기본소득제의 도입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부분기본소득제로 출발하면, 종착지는 완전기본소득제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기본소득제는 앞서 말한 기본소득제의 일곱 가지 속성 중에 일부가 빠진 것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넓게 보아 두 가지의 부분기본소득제가 소개되고 있다.

첫 번째의 부분기본소득제는 앞서 말한 기본소득제의 일곱 가지 속성 중 충분성을 뺀 방식이다. 즉,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급여자격의 무조건성을 충족하나 급여수준이 낮은 경우이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제에 관한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책인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2018)>에 의하면, 이러한 방식의 기본소득제야말로 학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기본소득제라고 한다. 충분성을 희생하는 대신에 무조건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부분기본소득제는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제안된 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러한 형태의 기본소득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등장했다.

만일 이러한 프로그램도 기본소득제의 하나라면 그것은 결코 새롭지 않다. 일본, 홍콩, 싱가포르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과 같은 형태의 현금 지급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일본은 2009년 자민당 아소 다로 정권 시절 정액급부금(定額給付金) 제도를 일회적으로 실시했다.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한 정액급부금 제도에 따라 일본에 주소가 있는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합법적 외국인 체류자들에게 기본 1인당 1만2천 엔을 지급했고, 18세 이하와 65세 이상자에게는 8천 엔을 추가해주었다. 물론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에서 이러한 제도들을 (부분)기본소득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정기성이라는 중요한 속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기본소득제의 하나라고 주장하기도 하니, 그런 것이라면 새로울 것이 뭐냐는 것이다.

부분기본소득제의 또 다른 형태는 급여자격의 무조건성에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¹⁾. 청년기본소득제, 농민기본소득제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제도를 기본소득제, 또는 부분기본소득제로 이해하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역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사회보장제도에는 이미 이러한 제도가 사회수당(Demogrant)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의 발전이 상대적으로 늦은 한국에는 오랫동안 이러한 형태의 제도가 없었지만, 2018년 9월에 아동수당을 시행하면서 도입되었다.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러한 종류의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제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새롭지 않다. 아동수당제도를 프랑스는 1932년, 영국·체코는 1945년부터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분기본소득제와 사회수당은 다른 제도라고 말한다. 앞서 인용한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2018)에 따르면, ‘아동수당’과 ‘아동

1) 이러한 부분기본소득제가 적용대상의 보편성에 제한을 두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데, 이는 틀린 말이다. 적용대상의 보편성이라는 속성은 사회보장제도가 가진 일반적인 특성이기 때문이다.

을 위한 부분기본소득'은 ①분배원리 ②실행목적 ③이념적 지향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한다.

우선 분배원리의 측면에서 아동수당은 욕구에 따른 분배라는 넓은 분배원칙을 가지지만, 아동을 위한 부분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부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공유권리에 따른 분배라서 새롭다는 것이다. 욕구에 따른 분배가 공유권리에 따른 분배와 다른 것은 사실이었지만, 더 넓은 분배원칙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공유권리에 따른 분배원칙이 더 넓은 원칙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다루겠다.

또한 실행목적에서는 아동수당이 아동의 복리, 모성보호,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확대, 저출산 극복 등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목표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이라는 문제를 가진다고 한다. 반면에 아동을 위한 부분기본소득은 아동 개인의 복지와 권리증진이라는 단순하고 간명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더 우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앞의 목표보다 뒤의 목표가 더 나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 아동수당은 복지국가의 틀 안에서 형성된 보완적, 보충적 제도라는 한계를 가지지만, 아동을 위한 부분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변혁적 제도라는 주장한다. 이 또한 실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실증해야 할 쟁점일 뿐, 근거가 충분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 주장의 요지는 완전기본소득제의 종착지로 가기 위한 출발이라고 주장되는 부분기본소득제가 이름은 새롭지만 그 내용은 결코 새롭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이름만 새것인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는 정치공학적인 계산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판단한다. 개혁적이고 참신하다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소액이라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돈을 주는 것을 마다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과거 산업화과정에서 선진국 추격(catch-up)이라는 목표 하에 외국의 제도와 기술을 도입, 소화, 개량하는 활동을 수행하면서 발전해왔다. 사회복지의 발전 과정 역시 다르지 않아서 외국에는 있지만 한국에는 없는 사회복지제도들을 차례로 도입하고, 소화하고 개량해왔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복지제도를 도입하고 확장하는 것이 곧 사회복지의 발전이며, 복지국가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인식은 굳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특히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시점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는 점 또한 이러한 생각의 관성을 강화하는 배경이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대상의 범위나 급여자격, 급여수준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 시행하는 '부분 복지 프로그램'의 수만 헤아린다면 한국은 단연 모범생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모범생인가?

소득 재분배만 강조하는 것은 낡은 생각이다.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개의 견해가 있다. 우선 소득계층들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를 강조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적 기능은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사회적 약자보다 강자에게 더 후한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 또한 이러한 견해를 공유한다²⁾. 사회보장제도이든, 복지국가 프로그램이든, 기본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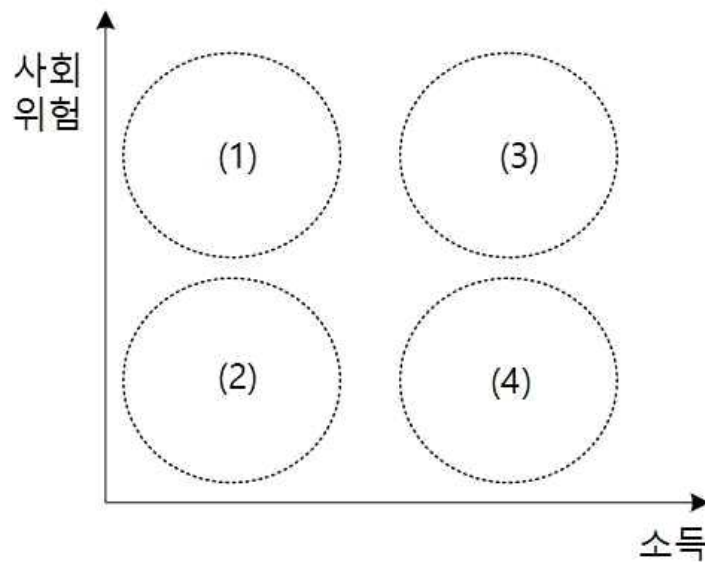
2) 기본소득의 정치철학적 기초라고 하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를 위해서는 최약자의 기회가 최대한 증가되어야

제이든 고소득자의 소득을 환수하여 현금으로 재분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을 소득계층들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로 보는 생각이 낡은 것이라면 어떨까? 나는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핵심기능은 소득계층들 사이의 수직적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위험의 분산에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수직적 재분배에서 사회위험 분산으로 그 기능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질적, 양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었고, 사회성원들에게 더 많은 편익을 줄 수 있었다고 믿는다. 사회위험 분산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제도는 재분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산출한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사회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반면, 재원부담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위험 분산 기능은 복지를 통해 이득을 얻는 수혜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기도 한다. 수직적 재분배 위주의 복지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복지제도의 발전정도가 더 낮고, 최종적인 소득재분배 효과도 높지 않다는 ‘재분배의 역설’이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사회위험 분산 기능은 ‘복지동맹’의 형성을 통해 정치적 지속가능성도 높였다. <그림 1>은 그 이유를 단순하게 묘사한 것이다. <그림 1>에서 (1)은 저소득-고위험 집단, (2)는 저소득-저위험 집단, (3)은 고소득-고위험집단, (4)는 고소득-저위험집단이다. 소득계층들 사이의 소득재분배만을 고려한다면, 복지동맹은 집단 (1)과 집단(2)에 국한된다. 그러나 사회위험이라는 새로운 균열의 축이 만들어진 결과 복지동맹은 집단(3)까지도 포괄할 수 있게 된다. 소득지위와 위험지위가 반드시 반비례관계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림 1> 소득지위와 위험지위의 관계

가령, 실업이라는 중대한 사회위험과 관련된 위험지위를 생각해보자. 숙련전속성이 큰 기능직의 고소득자의 실업위험이 숙련 전속성이 작은 노무직 저소득자의 실업위험보다 더 낮다고 단언하긴 어렵다. 질병, 노령, 돌봄과 같은 사회위험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득지위와 위험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모든 특권적 자원의 향유로 얻어진 추가소득을 조세로 환수하여 모든 사회 성원에게 평등하게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Van Parijs, 2010;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에서 재인용)

지위가 일치하지 않기에 다양한 집단(빈자와 중산층, 큰 숙련 전속성을 가진 노동자와 기업)이 복지동맹으로 연대할 수 있고, 정치적 다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널리 입증된 것이다. 복지국가를 재분배의 장치로 이해하면서, 소득불평등도가 큰 사회일수록 복지의 크기가 커질 것이라는 MR 모형(Meltzer & Richard, 1981)의 예측은 경험적으로 거의 지지되지 않았지만, 사회위험 분산의 장치임을 강조하는 이론적 논의들은 경험적으로도 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Varian, 1980; Baldwin, 1990; Moene and Wallerstein, 2001, 홍경준, 2009).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홍경준 · 김사현, 2018).

복지국가의 모범생으로 주목받았던 스웨덴의 경험을 살펴보면, 사회위험분산의 기능은 재분배 기능을 갹신한 결과였다. 스웨덴에서 재분배 기능을 강조한 시기는 1930년대와 40년대에 국한된다.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과는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 한편 재정은 소득수준에 비례하거나 누진적인 세금으로 충당함으로써, 소득재분배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재분배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원칙은 1950년대 이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재분배가 아니라, 개인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각종 사회위험을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분산시키는 것으로 원칙이 달라졌다. 위험분산의 기능을 우선시하는 보편적 복지가 시작된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스웨덴의 낮은 소득 불평등도는 사회보장제도 그 자체의 효과보다는 연대임금정책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의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이다.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보다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등 노동시장 공정성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제도의 핵심기능을 주로 재분배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계층들 사이의 재분배에서 위험집단들 사이의 사회위험 분산으로 발전해온 그간의 경과를 물론이고, 그러한 발전의 의미와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2. Too simple; 기본소득제는 단순하다.

내가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이다. 물론 단순하게 만들어진 제도나 프로그램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일 것이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생활보장체계는 다양한 요소들이 얹혀서 조직화된다.

인간의 생활을 보장하는 집합적 방식들은 등가교환, 호혜, 재분배로 구분할 수 있다. 등가교환은 시장을 매개로, 호혜는 지역사회(공동체와 결사체)를 매개로, 재분배는 가족과 국가와 같은 생활단위의 중심점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생활보장의 방식들이다. 집합적 생활보장의 세 가지 방식을 매개하는 시장과 국가, 가족, 지역사회가 생활보장체계의 제공주체이며, 이 중에서 시장을 제외한 다른 제공주체들이 조직화하는 것을 사회복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개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해, 사회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소득 불평등의 완화를 위해, 사회위험의 분산을 위해 제공하는 급여 역시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소비자주권주의의 실현과 운영효율성이 큰 현금 급여가 있는가 하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고, 목표효율성이 큰 현물 급여도 있다.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의 장점을 결합한 바우처(voucher) 형태의 급여가 있

는가 하면, 관계맺음을 중요한 특성으로 하는 돌봄과 상담 같은 비물질적인 서비스 급여도 있다. 존 롤즈(John Rawls)의 최소극대화 원칙(Maximin Principle)을 적용하여 취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역차별하는 기회라는 급여도 필요하다.

급여를 만들어내기 위한 재원도 다양하다. 원천을 생각한다면 모든 재원이 결국은 사회구성원들의 지갑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부의 재정지출과 조세지출, 사회보험기여금(payroll tax), 기부금, 이용자 요금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재원을 동원하여 만들어낸 급여가 대상자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도 있어야 한다. 전달체계라고 불리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정부 영리조직(NGO/PO)과 비영리조직(NGO/NPO),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지역사회와 각종 공동체와 결사체들이 있다. 이런 전달체계들은 대부분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다.

인간의 생활을 보장하는 집합적 방식들인 교환과 호혜, 그리고 재분배는 다양한 제공주체와 전달체계, 급여와 재원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고, 저마다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이다. 효율성, 효과성, 수월성, 민감성 등의 다양한 성과척도를 들이대면 문제는 도처에서 발견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문제들이 폐도난마식으로 정리되지는 않는다. ‘재분배-현금-중앙(지방)정부’로 조합한 제도 하나가 다양한 성과척도에서 이 모든 것보다 더 나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물론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폐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현금 급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조치들, 가령 의료보장이나 사회서비스가 기본소득제와 동반할 수 있는 제도로 많이 언급된다. 기본소득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여러 설계도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소득제를 이해하는 관점과 실행안의 내용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살생부의 내용은 꽤 많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기존 생활보장체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제를 추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 1인당 월 2만 5천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중세 없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다거나(이원재, 2020), 새로운 재원이 발굴되면 기존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전 국민을 포괄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백승호·이승윤, 2018)이 그러하다.

15조원의 예산을 줄 터이니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구상해보라 한다면, 전 국민 모두에게 월 2만 5천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택하지 않을 사람도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 조건을 완화하거나,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높이거나,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인상하거나, 고용보험제도 모성보호사업에 대한 정부기여를 늘리는 제도를 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의 용처를 둘러싸고도 가구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일이 일어났음을 상기해보자. 재정지출의 몫을 정하고, 나누는 일은 전문가의 책상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국회의 핵심기능으로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새롭게 발굴한 재원인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기본소득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다른 제도의 예산 조정이 따를 것이다. 복지제도 통폐합이든, 재정 효율화이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폐지를 통한 소득세제 정비이든 그 최우선순위는 기존의 복지제도 관련 예산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재의 방식도 변화할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제와의 대비를 위해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성 사회보험제도에 초점을 두어보자. 우선 급여수준이 낮아서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장기가입자 수의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수령액이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2019년 12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수급자가 받는 평균 연금급여액은 52만 7천원을 약간 넘는다. 이 액수는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인 가구 선정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민연금 평균 급여액이 빈곤선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액 또한 낮은 수준이다. 상한액 기준으로 최대 월 198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지난 3월 1인당 구직급여 평균액은 월 148만원이다.

광범위한 사각지대도 문제다.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어왔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사회보험은 상시 상용직 노동자를 핵심 타겟으로 삼아 시작되었다. 19세기 말에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그 당시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했던 것이다. 그 후 도시와 농촌의 자영자를 포괄하고, 고용형태의 변화를 쫓아가면서 임시, 일용 등 비전형 노동자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확대되어왔다. 하지만, 탈공업화와 디지털기술의 확산에 기초한 기술혁명은 전통적인 고용관계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새로운 종류의 고용형태를 만들었고, 이러한 고용형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표준적 형태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험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이들을 포괄하기는 쉽지 않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고 있는 커다란 변화에 대해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기술혁명이 초래할 변화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기술혁명이 가져오는 변화는 사회보험의 발전에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Iversen & Rehm, 미간행). 사회보험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가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실패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회위험에 대한 빅데이터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사회보험을 사보험(private insurance)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반대로, 빅데이터 정보의 축적과 활용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교하고 신속하게 사회위험을 분산하는 사회보험을 출현시킬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소득활동에 대한 빅데이터 정보의 축적과 활용 또한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보험이 표준적 형태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설계된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의 작업공간’인 사업장이 보험료를 징수하는데 유일한 통로였거나 편리한 통로였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를 봉급 지급명부(payroll)에 기초한 세금(tax)이라 부르는 배경이다. 특고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성을 둘러싼 복잡한 논란이 있는 근본적 배경에도 사업장을 통한 보험료 징수라는 오래된 관행이 있다. 이 오래된 관행이 기술혁명의 거대한 변환 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청의 홈텍스 플랫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소득세를 정산하고 납부하며, 지원금을 받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확산은 사업장을 통한 보험료 징수의 관행을 개인의 개별적인 소득 자료에 기초한 납세 방식으로 바꾸게 할 수도 있다. 전통적 고용관계에 편입되어 있는 사람은 현행의 방식대로, 1인 자영자나 사업장에의 의존도가 낮거나 없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이 직접 소득을 월 단위로 신고하게 될 수도 있다. 점차로 모든 소득자의 다양한 소득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에 기초한 사회보험은 고용지위와 상관없이 개인 소득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 시대의 변화를 말하지만, 동시에 그 변화가 사회보장제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다

거나, 또는 부정적인 영향만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단순한 것이 아닐까?

3. Too exclusive; 기본소득제는 배제적이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이념의 퇴조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보호무역주의, 기술 안보주의, 노동력 이동과 이민에 대한 규제, 자국기업에 대한 리쇼어링 등은 코로나 19의 세계적 대유행과 함께 폐쇄적 민족주의를 강화시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물론 기본소득제의 도입 주장이 이런 흐름과는 무관하다 하겠지만,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기본소득제는 국가 간 장벽 쌓기를 부추길 수 있다. 내가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세 번째 이유이다.

국적(영주권)이라는 급여자격 조건은 배제적이다.

칼 폴라니(K. Polanyi)는 <거대한 변환: 우리 시대의 정치적 경제적 기원>에서 토지와 화폐, 노동을 상품화하고 사회를 시장화하려는 운동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운동 사이의 작용과 반작용이 우리 시대, 즉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을 통해 우리가 경험한 바는 ‘시장의 작용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운동이 언제나 진보적인 세력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운동은 여러 빈민법처럼 봉건귀족과 지주, 교회가 주도하기도 했고, 공장법이나 노동자보험처럼 반사회주의자, 교회 반대자, 급진적 제국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주도한 적도 있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한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세계 도처에서 포퓰리즘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한다.

‘시장의 작용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운동이 언제나 성공했던 것도 아니다. 최저생활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 농촌사회를 지키는 댐을 건설하려 했던 ‘스핀햄랜드 빈민법(The speenhamland Act)’은 오히려 시장화의 속도를 높이고, 자유주의의 승리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었다.

‘시장의 작용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운동이 언제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권리와 자유의 확대에 기여한 것도 아니다. 파시즘 역시 ‘시장의 작용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운동이었다. 상기해보자. 나치독일의 복지정책은 노동자를 비롯한 여러 사회계층에게 신분상승의 기회, 근대적 여가의 향유, 대량소비사회에의 참여, 광범한 복지혜택 등을 주도록 설계되었다. 사회보험 가입대상의 확대, 행정체계의 합리화가 이루어졌고, 세금에 기초하여 전 국민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제도의 도입방안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나치 독일의 사회복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한다. 발전과 진보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정책은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라는 파시즘의 이념을 토대로 ‘민족의 동지(Volksgenosse)’와 ‘공동체의 이방인(Gesellschaftsfremde)’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의 작용으로부터 사회를 지키려는’ 운동 중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는데 기여한 성공적이었던 것들도 있다. 19세기 말에 이루어진 사회보험의 제도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20세기 중반부터 개화한 복지국가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왜 성공했나? 경제 불황과 대공황,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기가 이러한 운동에 앞서 발생했기 때문인가? 내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운동들은 통합과 연대의 아이디어에 기초했다는 점이다. 이주민을 분리하고 격리하기보다 원주민을 구성하는 정체성의 경계를 확장하는 조치를 발명하

고 활용했다는 점이다. 가문과 종교, 지역과 신분, 언어와 종족의 관념에 기초한 공동체(ethnie)를 국민이라는 관념에 기초한 공동체(nation)로 바꾼 것이다. 국민국가(nation state)라는 상상된 정치적 공동체의 주춧돌은 시민권이라는 아이디어였다. 시민권에 기초하여 건설한 국민국가는 훨씬 큰 범위에서 경계를 설정할 수 있었고, 시장의 작용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사회 역시 이 경계 내에서 구체화될 수 있었다. 사회보험, 사회보장법, 그리고 복지국가는 바로 이 시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 시민들 사이의 연대를 추구했다.

국민국가를 경계로 삼은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는 그 울타리 안에서 급여의 자격 여부(deserving vs. undeserving)를 개인이 가진 속성보다는 사회의 구조적 결함과 관련된 것으로 확장해왔다. 소득지위나 위험지위를 생각해보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논쟁거리이긴 하나, 빈곤을 완전히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다. 사회위험 또한 마찬가지다. 개인이 생애주기에서 직면하는 모든 위험을 사회위험이라 하지는 않는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위험인 것이다. 욕구의 미충족은 어떠한가? 인간 기본욕구의 미충족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인식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기본욕구의 개념이 등장한 것이다.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확장에 기여한 이유는 이처럼 급여의 자격을 개인의 속성에 귀속되는 것으로부터 점차 탈피해왔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제는 어떠한가? 기본소득제의 철학적 기초는 모두를 위한 실질적 자유라 한다. 사회관계가 낳는 모든 특권적 자원에서 파생하는 추가소득의 재분배가 이를 실현할 수단이라고 한다. 사회보장제도와 복지국가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소득의 속성은 적용대상의 보편성과 급여자격의 무조건성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적용대상과 급여자격의 최대치는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특정 정치공동체에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제한된다. 그러므로 부분기본소득이든 완전기본소득이든 모든 기본소득제의 정확한 이름은 ‘국민’ 기본소득제, ‘원주민’ 기본소득제이다. 보편적이지도, 무조건적이지도 않다.

공유권리라고 치장하지만 사실은 국적과 영주권일 뿐인 이러한 조건은 급여의 자격조건을 다시 개인의 속성과 관련한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자격조건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국민이 아니라 외국인이어서, ‘동지’가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이 적절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폐쇄적 민족주의에 편승하여 급여의 자격조건을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이 용인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발전이고 진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만 공유부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제는 돈이 많이 든다. 기본소득제의 6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한 보고서(이원재·윤형중·이상민·이승주, 2019)에 따르면, 2021년 월 30만원 지급 시에 187조원, 2023년에 월 45만원 지급 시 280조원, 2028년에 월 65만원을 지급한다면 405조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물론 세금이다. 세제의 정비와 새로운 세수 발굴, 기존 복지제도의 통폐합과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곤 한다. 주목할 것은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세목 신설과 관련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의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중시하는 세원이 바로 공유부이기 때문이다.

공유부란 토지와 환경, 데이터(정보)등 가치를 가지지만, 개인이 혼자만의 노력을 통해 획득한 부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지칭한다. 공유부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모두의 소유물이므로, 이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부에 대한 세목신설과 관련하여 그간 한국에서 주로 언급되었던 것은 토지에 대한 국토보유세와 환경과 관련한 탄소세이다. 하지만, 토지와 환경과 같은 공유부에 대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기본소득제에 필요한 재원의 일부만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인지자본주의’에서의 자유/무료 노동의 착취문제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기제의 마련이라는 문제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백옥인, 2013; 이항우, 2015). 인지자본주의론자들에 따르면, 인지자본주의 가치 창출과 자본 축적의 핵심 자원은 사회구성원의 자유/무료 노동이다. 이 노동은 자발적이며 자유롭게 지식, 정보, 문화, 관심, 정동의 형식으로 가치를 창출하지만, 이러한 가치는 플랫폼을 제공한 자본에게 일종의 지대수익으로 전유될 뿐 아무런 화폐적 보상이 제공되지 않는다. 자유/무료 노동인 이유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자유/무료 노동에 대한 화폐적 보상으로 위치를 부여할 수 있다(이항우, 2015). 아직 충분히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데이터(정보)세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주장과 연관지을 수 있다.

인지자본주의의 발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자유/무료노동에 대한 화폐적 보상이 쟁점으로 부각된다면,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재원조달의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백승호·이승윤, 2018). 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나는 기본소득제에 찬성할 수 없다. 기본소득제는 공유부를 창출한 사람들 중 일부만을 골라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³⁾. 전속성(asset specificity)이 거의 1에 가깝게 큰 토지의 경우는 공유의 경계를 비교적 쉽게 설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토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므로, 거기서 나온 수익을 대한민국 국민만이 공유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다. 하지만, 탄소나 데이터는 어떠한가? 대한민국 기업이 배출한 탄소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심화된다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해야 하는가? 정보는 더욱 그렇다. 플랫폼 기업이 전유하는 막대한 지대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유/무료 노동을 대한민국 국민만이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환경이나 정보가 공유부라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그 공유에 대한 권리를 특정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만 제한하겠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가난한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자유/무료노동을 잘사는 선진국 국민들의 기본소득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공유부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비국민의 몫을 국민이라는 일부의 사람들이 착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것인가?

3) 이보다는 모든 사람(국민이든 아니든)에 대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기업이 개별적으로 지불하고, 그렇게 지불된 소득에 대해 국민국가가 과세하는 방식이 더 나을 수 있다.

토 론 문

오 건 호 공동운영위원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위원 (전)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전)

기본소득의 열망과 한계

1. 기본소득의 강점

기본소득의 시대정신: 고발과 열망

- 고발: 기본소득은 현체제에 대한 강력한 고발을 담은 의제. 불안정 노동시장과 복지 체제 사각지대에 대한 고발. 시장은 갈수록 사람을 억압하고, 이를 보완하는 복지체 제도 광범위한 사각지대 방치.
- 열망: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의 비인간적 분배를 넘는 새로운 사회를 상상함. 사회로부터 배당을 받는 세상. 이는 시민들에게 인간다움을 추구하는 발판이 될 것. 특히 4차 산업 혁명으로 인공지능시대가 도래하고 있기에 기본소득 배당은 필수적인 분배체도로 전망.

기본소득의 기대

- 사각지대 없음: 심사 없이 모두에게 제공하므로 사각지대 발생하지 않음.
- 재분배 증진: 누진적으로 재정을 조달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므로 부의 재분배 구현. 일부 현금복지급여를 대체하더라도 보완대책을 통해 복지후퇴 계층이 없도록 설계 가능.
- 복지행정 비용 절감: 기본소득은 수급자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행정비용 절감. 이 비용까지 복지급여로 활용할 수 있음.
- 중세 정치: 기본소득은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지만 다수 시민이 낸 것보다 많은 금액을 받고, 시민의 권리에 따른 배당이어서 역동적인 중세정치가 가능하리라 기대.

2. 기본소득의 한계

기본생활 보장?: 기본소득은 정말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가?

- 기본소득은 주로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가난한 청년과 불안정 노동자들을 호명. 그런데 모두에게 조건없이 지급해야 하기에 호명된 사람뿐만 아니라 꽤 많은 소득자에게도 기본소득을 제공. 모두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려니 아주 오랫동안 기본소득은 소액으로 운영할 수 밖에.
- 올해 3차 추경까지 반영한 보건복지부 전체지출이 90조원 육박. 이 재정을 모두 기본소득에 사용해도 월 15만원 지급에 그침.
- 과연 90조원의 재원으로 15만원을 지급하는게 합리적 지출인가? 정작 호명된 사람들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인가? 오히려 이들을 지원할 수단을 낭비해 버리는 건 아닌가?

재분배 효과?: 기본소득이 달성하는 재분배는 적절한가?

- 기본소득은 재원을 누진적으로 마련하고 동일액을 지급하니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 기본소득만 보면 이전에 비해 재분배가 진행됨.
- 사실, 기본소득에서 발생하는 재분배는 기본소득 원리(모두에게 동일액 제공)가 아니라 재원구조에서 기인(누진적 세입).
- 애초 공공재정은 재분배를 지향하는 돈. 만약 같은 재정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훨씬 증진된 재분배를 이룰 수 있고 기본소득이 호명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 할 수 있음.
- 기본소득의 재분배 효과는 천문학적인 공공재정으로 얻을 수 있는 최저의 결과에 가까움. 다른 급여 지급과 비교해 현저히 재분배성 떨어짐.

복지행정 비용?: 기본소득은 복지행정 비용을 줄이고 사각지대를 없애는가?

- 현행 복지체제에서 맞춤형 현금급여(생계급여, 실업급여, 기초연금)는 심사과정을 거침. 여기서 복지행정비용이 발생하고 낙인 효과도 생김. 이는 기존 복지체제가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직면하는 과제임을 직시해야. 기본소득은 작은 금액의 부분기본소득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음. 기본소득이 생계급여액(1인가구 53만원)을 훨씬 넘지 않는 한 생계급여제도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기본소득이 실업급여액(하한 180만원)을 넘지 않는 한 실업급여도 계속 운영되어야 함.
- 결국 기본소득을 시행해도 아주 오랫동안 맞춤형 현금급여와 공존할 수밖에 없음. 기본소득이 현행 복지체제 행정을 근원적으로 불신임하는 건 복지체제/기본소득 논의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3. 제안: ‘필요’ 기반 복지체제 강화

보편주의 이해: 단일제도 넘어 ‘제도의 망’

- 사회정책에서 보편주의의 핵심 원칙은 ‘포괄성과 적정성’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적정 급여를 보장해야.
- 이 때 보편주의가 항상 하나의 프로그램(제도)으로 구현되는 건 아님.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 아동수당 등 단일제도에서 보편/선별 논란이 진행되었지만, 보통 복지국가에서 시민의 기본 삶을 보장하는 보편주의는 다양한 ‘제도의 망’으로 구현됨.
- 예를 들어, 노인을 위한 보편적 소득보장체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제도로 보편/선별을 따지기 보다는 법정 다층연금체계(기초/국민/퇴직)로 소득계층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평가해야. 즉, 여러 프로그램들을 조합해 ‘보편성, 적정성’을 구현하는 게 보편주의.
- 기본소득은 단일제도로 보편주의를 구현하려는 시도. 이는 기본소득으로 아주 높은 금액의 소득보장을 지원하지 않는 한 달성할 수 없음.
- 결국 ‘필요’ 기반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전체 생애에서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게

보편적 사회정책의 본령.

코로나 재난과 복지체제 혁신: 소득 기반 인프라 구축

- 2010년 무상급식 논란 이후 복지제도가 확충되었으나 사각지대 문제 큼(1단계: 2010~2020).
- 코로나 재난으로 복지체제의 사각지대 문제가 정치적 의제로 등장하고 전국민고용보험제 등 사각지대 대응하는 ‘대안 담론’ 이 부상.
- 2020년은 우리나라 복지체제 발전에서 복지체제의 공공화/내실화/혁신을 이루는 전환점일 수 있음(2단계).
- 근래 경제적 관계의 디지털화, 전산화로 소득과약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증진.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매출도 거의 파악되는 상황. 복지체제의 사각지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형성.
- 우선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가입자를 정의할 때 기존 ‘자격’ 기준에서 ‘소득’ 기반으로 전면 전환하면 대폭 개선할 수 있음. 또한 일반 복지급여 산정도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토대로 합리적 관리 가능(소득인정액 시차로 인한 복지행정 한계 극복).
- 즉, 현행 사회보험, 복지/과세행정 체계의 혁신이 가능해짐. 소득 기반 과세인프라를 토대로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제를 구축해야.
- 이를 위해 국세청의 역할을 과세행정을 넘어 복지체제로 확장해야. 국세청이 자격/부과 관리를 총괄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급여서비스에 집중.

제안: ‘필요’ 기반 혁신복지체제

- 절대빈곤층(공공부조 강화): 현재 1인 가구 기준 53만원 지급. 급여 수준 낮고 사각지대 넓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급여 기준 상향 필요.
- 저소득취업자(근로장려금 및 사회임금 확대): 시장 소득 보전을 위해 근로장려금 보강. 재산 기준 대폭 완화하고 지원액 상향 추진. 동시에 보육/주거/의료/요양/노후 등 사회임금 강화해 가계지출 수요도 줄여야.
- 취업자(소득 기반 사회보험체제): 코로나 재난으로 사회보험을 혁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전국민고용보험을 시작으로 4대 사회보험의 토대를 ‘자격’ 에서 ‘소득’ 으로 전면 전환해 사각지대 대응. 그럼에도 발생하는 한계계층은 실업부조, 공공부조 등으로 대응.
- 사회수당 확장: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집단별 수당 확장. 아동수당을 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수당적인 최초구직자수당을 시행하며, 예술인과 농민처럼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집단에게 직능수당 도입.
- 재원 방안: 혁신 복지체제는 기본소득보다는 훨씬 적지만 추가 재정을 요구. 증세 정치가 신뢰와 연대에 좌우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안전망이 강화된다면 세입 확충도 가능한 일이라 판단.

현재, 미래 그리고 기본소득

- 보편적 복지 원리가 근원적으로 기본소득을 배척하지는 않음. 인구 대다수가 노동에서 해방(혹은 배제)되는 인공지능 시대라면, 소득보장은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방식으로 전화할 것.
- 기본소득의 현실화는 노동시장의 동질성 수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함. 대다수가 탈노동되고 동일한 현금지원 필요를 지닌다면 복지국가의 현금복지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할 것(대다수가 실업 무소득자이므로 공공부조, 실업부조, 사회수당이 통합될 것).
- 지금 우리는 고용율이 66%, 즉 성인 대다수가 취업에 참여하는 사회에 살고 있음. 현재 핵심 문제는 불안정과 격차. 산업구조/노동시장의 변화를 주목하며 새로운 분배를 상상하되, 진정 절박한 사람을 위한다면 지금은 ‘필요’ 기반 복지체제를 공고히 할 때.
- 결론적으로, 현재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필요 기반 복지체제, 사회수당형 현금복지 강화의 방향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연대하기를 희망함.

[주 제 발 표Ⅱ]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양 재 진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한국사회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정책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 부회장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해소와고용+ 위원회 위원

기본소득이 화두다. 2016년 이세돌이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대결에서 패했다. 인간의 인지노동을 대체할지도 모를 인공지능의 등장이 공포로 다가왔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만나게 된다면, 과연 그 때도 인간의 노동이 필요할까? 시간 문제일 뿐,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서비스업종에서도 인간의 모습과 감정마저 흉내내는 휴머노이드가 등장할 거라고 한다. SF영화 같은 세상에서는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없다. 노동을 못하게 되면 생활비는 어디서 버나? 실업수당 받듯이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사회에 기본소득이란 화두는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미래사회에 대한 공포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는 미래사회 담론에서 논의되던 기본소득을 현재의 생활 속으로 끌어들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씩 지원되었다. 경기도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되었다.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경제위기 시에 정부가 세금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전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왜 그런가? 필자는 그간의 모든 재정지출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름은 재난지원금이라 붙여졌지만, 재난이라는 위험 발생여부와 그 크기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었다. 아동수당을 아이가 없는 집에 지급된 꼴이었다. 존폐의 위기에 처한 골목상권에 가서 쓰라고 지급된 것이니, 재난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었다는 설명도 그럴 듯하다. 하지만 이례적이긴 마찬가지다. 정부처럼 매출장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생존이 어려운 가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그저 맛집이라는 곳 찾아가고, 학원비 선결제하고, 삼겹살 대신에 소고기 사먹어 보는 식이었다. 어쩌다 어려운 가게로 돈이 흘러들어가겠지만, 직접적인 도움은 못되고 간접적일 수 밖에 없다.

1997년 IMF 경제위기에서도,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도 이번처럼 전국민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없었다. 해외 어느나라에서도 이번 경제위기를 돌파한다고 한국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준 사례는 없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런 이례적인 급여를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제도화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자는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이유는 다양하다.

토지, 빅데이터, 과거로부터 축적된 지식과 기술 등 공유부(Common Wealth)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가 있으니, 공유부로부터 생성된 이익을 $1/n$ 로 나눠갖자는 공유자산론부터 돌봄 및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 가치있는 무급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참여소득론까지 다양하다. 이중에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으니 기본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여 1차 소득안전망을 깔면 사각지대도 해소되고 소득불평등도 완화된다는 주장이다.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실업에 빠지거나 존폐의 기로에 선 영세자영업자를 돕자는 주장처럼 그럴 듯하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기본소득 방식은 워낙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국가에서 세금 거두어 국민에게 나눠 주는 것이니 기본소득이나 현금성 복지급여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기존의 사회보장급여와 기본소득은 원리 자체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개인 대상인 반면 기존 사회보장급여는 개인(예: 실업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과 함께 ‘가구’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금 EITC)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저소득계층을 타겟으로한 복지급여는 가구단위로 지급된다. 왜냐하면 중산층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전업주부처럼 개인단 위로는 저소득이나 무소득자이지만, 가구단위로 따지면 당장 국가의 도움이 필요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현금성 급여인 데 반해, 사회보장은 현금과 ‘서비스’를 정책수단으로 한다. 아이 키우라고 100만원씩 아동수당을 줄 법도 한데, 국가는 아동수당으로는 10만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공보육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쓴다. 100만원씩 받아서 다 아이를 위해 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기본소득은 정기적/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 사회보장에서도 노인 같은 비생산연령인구에게는 정기적/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준다. 하지만 근로연령대 인구에게는 수급 조건을 단다. 그리고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유인하기 위해 기간에 제한을 둔다(예: 실업급여: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 조건, 최대 9개월 지급). 넷째, 기본소득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지만, 사회보장 급여는 실업 등 ‘사회적 위험’ (social risks)과 육아, 질병 치료 등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 (needs, 필요)가 있는 일반 시민, 그리고 최저생계도 못 꾸리는 저소득층에 한정해 지급된다.⁴⁾

이 마지막 네 번째, ‘사회적 위험과 욕구 판정’ 문제가 기본소득과 복지급여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낸다. 현대 복지국가는 거대한 공적 보험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한다. 그러나 복지급여는 실업 등 사회적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집중된다. 실직자(실업급여), 노인(연금),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한 사람(건강보험), 출산과 육아로 일을 못해 소득상실에 처하거나(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아이 때문에 생활비가 더 드는 사람(공보육, 아동수당), 소득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수입이 적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및 EITC) 등이 지급된다. 사회적 위험에 빠졌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만 복지급여가 제공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급여의 크기는 동일하지 않다. 위험이나 필요에 비례해 적절한 수준을 주고자 한다. 감기걸린 사람과 암치료를 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냈더라도, 자동차 사고가 난 소수의 사람에게, 또 사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것과 원리상 동일하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다르다.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았어도, 모든 사람에게 매달 동일한 보상금을 나눠준다. 위험이나 욕구발생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실직하지 않았어도, 아프지도 않아도 무조건 개인에게 동일 액수를 나눠준다. 누구나 똑같이 받으니 공평해 보이지만, 상부상조나 사회적 연대 정신은 담겨 있지 않다. 장애인이라고 더 배려하는 것도 없고 실직자라고 또 가난하다고 더 주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한 보장 기능도 없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미리 나눠주니, 사후적 보상이 아닌 사전적 보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런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가성비 낮은 기본소득 방식으로는 사각지대 해소도 소득보장도 난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접한다. 2014년 송파 세

4) 양재진. 2020. [복지의 원리: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서울: 한겨레 출판.

모녀 사건이 언급되면서 말이다. 세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수중에 남은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써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동반자살하였다. 모두를 안타깝게 만든 사건이다. 그런데 과연 기본소득 방식으로 빈곤층의 사각지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현재 15조원 정도를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쓴다. 15조원을 추가로 마련해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쓰자고 가정 하자. 마침 이재명 지사가 15조원을 마련해 기본소득을 시행하자하니, 이 돈을 기본소득방식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 누구나 다 받으니, 사각지대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월 2만4천 원씩 받게 된다. 세 모녀는 총 7만2천원을 받는다.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을지언정, 실효성이 없다.

세 모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된다면 생계급여로 월 112만원, 이에 더해 월 35만9천 원씩 주택급여도 받는다. 세 모녀의 어머니가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월 최대 198만원에서 최소 160만원을 받는다. 만약 두 딸이 구직활동을 하거나 직업훈련을 받으면 각각 6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받을 수 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사각지대의 해법은 기본소득이 될 수 없다. 5,200만 국민이 1/n로 나뉘어가지니, 급여가 낮아도 너무 낮다. 사각지대 해소는 급여 수급 조건을 완화해 기존 복지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도 기본소득방식으로는 해결 난망이다. 2019년 실업급여 지출액은 총 9조 3,355억 원이었다. 이 돈으로 1인 최대 9개월 동안 월 198만원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이 9조 3,355억 원을 기본소득방식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월 1만4천9백 원이 된다. 즉, 우리는 현재 1만4천9백 원짜리 기본소득 줄 돈으로 198만원까지 주는 실업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1350만명의 임금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의 0.8%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고용주 부담 0.8%를 더하면 총 1.6%). 이 돈으로 3%대 실업률이니, 한해 약 45만 명의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다수가 보험료를 내지만 소수가 받으니,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부족하나마 실직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만약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커버하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9조원을 쓰더라도 약 1만5천 원짜리 밖에 안 된다. 물론 기한제한도 없고 가족모두가 받으니 1만5천 원 이상의 효용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실직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다. 기본소득 급여를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 고용보험에서 줄 수 있는 최대급여 198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매년 1,235조 5000억 원이 소요된다. 대한민국 GDP 1,800조원의 69%가 소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인 50만원을 주면, 312조원이 소요된다. 2020년 국가예산 500조원의 3/5이 넘는 큰돈이다.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의료급여로 해결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으로 해결하듯이 다른 독일처럼 일반재정에서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식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기본소득처럼 일반재정에서 지원되는 것이나, 아픈 사람에게 의료급여가 지급되듯이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이나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각지대 없는 소득보장을 하자면 기본소득은 푼돈 정도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적정 급여를 지급하자면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사회적 위험이나 필요의 차이를 따지지 않고 동일 급여를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에 생기는 문제다. 2017년 현재, 실업, 연금, 육아휴직급여, 아동수당, EITC 등 모든 한국의 현금

복지지출을 더하면 총 73.39조원이 된다. 이를 전 국민 기본소득화하면 월 11만7천원이 된다. 그런데, 현 사회보장제도에서는 73.39조원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1인 가구 월 52만7천원, 주택급여 포함 시 79만3천원), 실업급여(최대 월 198만원), 육아휴직급여(최대 월 120만원, 순차적으로 부부가 사용하면 3개월 최대 250만원), 국민연금(최대 월 194.4만원), 기초연금(하위 20% 월 30만원, 나머지 80% 월 25만원), 아동수당(월 1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 방식의 소득보장은 너무나 가성비가 낮다.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⁵⁾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사회보장을 위축시킬 것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급여보다 소득보장 효과가 떨어진다.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도 없다. 게다가 저소득층과 실직자 등 소득이 격감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복지급여와 달리 소득이 있고 부자인 사람에게도 동일한 액수가 주어지니 기본소득은 소득재분배 효과도 뒤진다. 현행 복지체제를 대체하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회복지적 성과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좋아질 리가 없다. 따라서 일부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 차원에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운동을 펼치고 있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도 2016년 서울대회를 통해 기본소득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기보다는 기존 복지국가의 기능을 보완하는 ‘보완제’로서 위치하고 있음을 선언하기도 했다. 이들은 국토보유세, 생태세, 로봇세, 자산에 대한 과세 강화,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 신규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기본소득에 사용하면 기존 사회보장급여를 통폐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⁶⁾

실제로 최한수의 추계에 따르면, 모든 경제주체가 현재 자신이 내고 있는 소득세 같은 직접세와 소비세 같은 간접세를 지금보다 53%씩 더 내면, 1인당 월 30만원(연 36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⁷⁾ 그러나 새로운 세수를 확보했다고 해서, 예산 제약 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때문에 연금지출과 의료비 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유지해도 2040년이 되면 OECD평균의 사회지출이 예상된다 (GDP 대비 21%). 이런 상황에서, 증세로 확보한 가용 재원을 기본소득에 써버리게 되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 예산 제약 상황을 당장은 모면할 수 있다. 그러나 후세대 정부의 예산제약은 더욱 커진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는 푼돈 수준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기본소득이 보완적으로 도입된다 하더라도, 도입되는 순간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실제로 기본소득을 설계할 때, 의료 등 사회서비스는 유지한다하더라도, 대부분 기본소득 지급 액수만큼 현금성 복지급여는 삭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⁸⁾ 소득보장과 사각지대 해소에 실효성이 없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떨어지는 기본소득이 가성비 좋은 복지급여를 대체하는 것이다. 기

5) 양재진. 2020.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은 한국 복지국가 발전의 보완제가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의 정책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노사공포럼 통권 제51호 (2020년 제 1 호).

6) 백승호. 이승윤. 2018. “기본소득 논쟁 제대로 하기” 한국사회정책. 25:3.

7) 최한수. 2020. “한국사회에 지금 기본소득이 필요한가.” 박주민 의원실 주최 기본소득 토론회 발제문 (2020.06.16.).

8) 김교성.백승호.서정희.이승윤. 2018. [기본소득이 온다]. 사회평론아카데미. 이원재.윤형중.이상민.이승주. 2019. “국민기본소득제: 2021년부터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델 제안.” LAB 2050 솔루션 2050-04.

본소득이 사회보장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설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은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낼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한국의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2018년 현재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1.1%이다. OECD평균 20.1%의 55%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도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55% 밖에 안 되니, 빨리 복지지출을 늘려서 선진복지국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55% 수준 밖에 안 된다고 결론지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현재 한국의 고령화는 아직 15% 수준이다. 유럽의 다른 나라가 20%를 넘는 것에 비하면 아직은 젊다. 현재 한국의 연령구조가 상대적으로 젊은 만큼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높지 못하다. 게다가 아직 역사가 짧은 국민연금은 보험료만 거두어들이고 있을 뿐, 연금지출은 2028년이 되어야 크게 늘기 시작한다. 이런 요인을 감안하면, 현재 제도적 차원에서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은 GDP 대비 16%~18% 정도로 추정된다. 호주, 캐나다, 스위스와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작은 복지국가임에 분명하다. OECD 평균 20.1%에 못 미치고, 25% 이상의 사회복지지출을 보이는 유럽의 큰 복지국가와도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이 OECD평균의 55% 수준이라고 여기고,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게 되면 얼마안가 과도지출(overshooting)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사회보장 수준이 OECD 평균의 55%가 아닌 80~90% 수준, 유럽의 큰 복지국가에 비하면 45%가 아닌 65%~72% 수준이라는 평가 위에서 사회보장의 확충을 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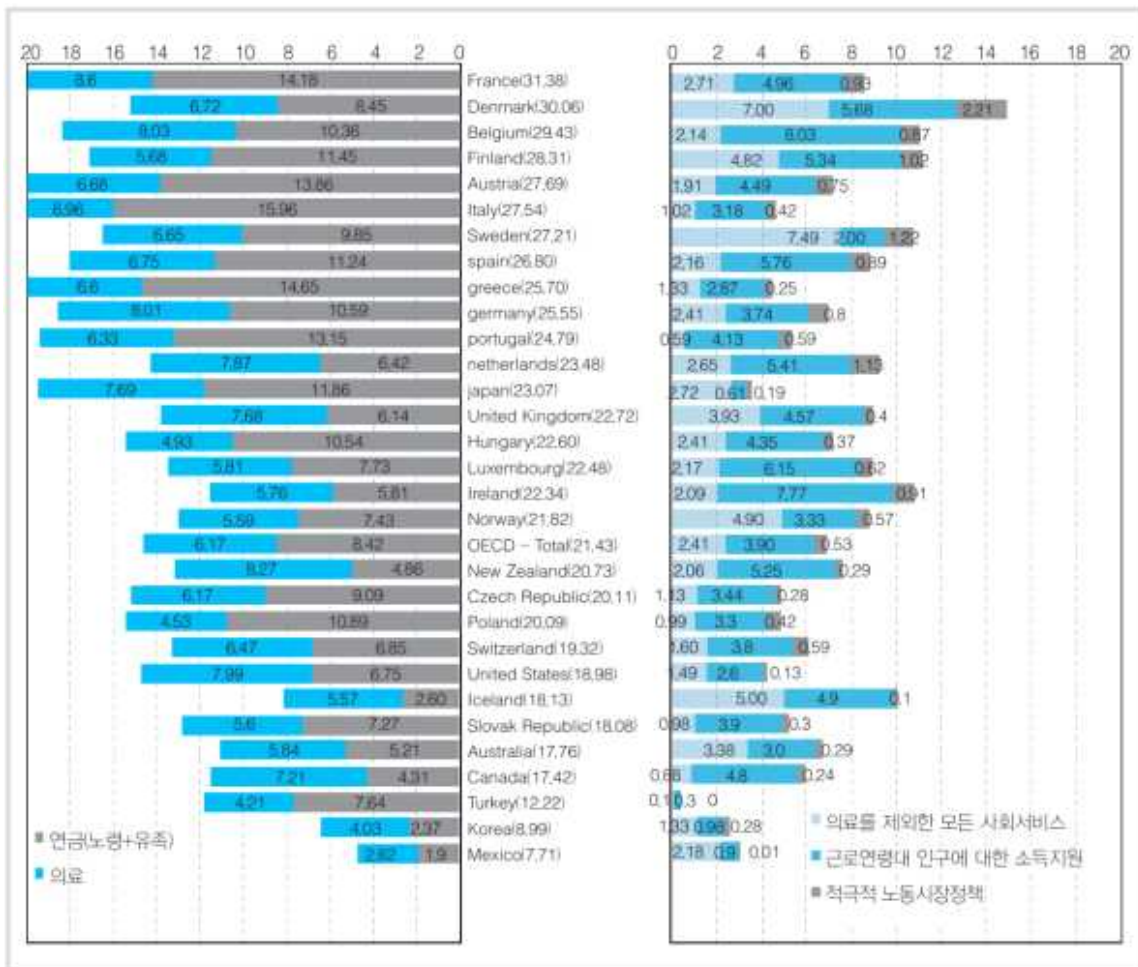
복지프로그램 구성의 중요성

더 중요한 점은 사회지출 증가가 곧 복지국가 발전이 아니라는 점이다. 2016년 이탈리아의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28.3%인데, 스웨덴은 26.4%이다. 이탈리아의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스웨덴보다 높다고 해서, 이탈리아가 더 선진 복지국가라고 아무도 여기지 않는다. 탈빈곤, 건강, 고용율 등 모든 사회 지표에서 스웨덴의 성과가 월등하다. 따라서 단순히 복지지출 총량을 늘리기 보다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때 적제적소에 지급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지출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복지가 경제와 선순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복지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

아래 <그림 1>을 보자.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복지프로그램 구성에서 특이한 점은, 고령화와 연관되어 있는 연금과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통제되어 있고,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보육 등 사회서비스 그리고 아동수당, 육아휴직 수당, 실업급여 등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반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은 연금과 의료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고,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림 1> OECD국가의 사회지출 구성

(GDP 대비 %, 2011)



자료: Jae-jin Yang. 2017.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pter 2.

복지프로그램 중에도 고용량을 늘이고 인적자원개발 효과가 큰 사업들이 많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사회보장시스템은 사회적 위험에 빠진 근로세대에게 관대한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연계시켜 노동시장으로의 재복귀를 유도한다. 양성평등과 관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통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질 높은 공보육과 공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이도 중산층 가정 아이와 동일한 출발선에서 타고난 재능을 계발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동시에 스웨덴과 덴마크는 고령화 관련 지출은 최대한 합리화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매우 낮다 (병원 입원도 마찬가지다). 조세로 운영되는 국영의료 서비스(NHS) 체제에서 소위 무상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나, 과도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게 의료공급자와 국민 모두를 통제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고령자의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1992년 에텔 개혁을 단행해 재택장기요양서비스 위주로 바꾸었다. 의료비를 억제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였다. 우리처럼 단가가 비싼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여생을 보내지 않는다.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웨덴은 1999년 GDP대비 30%의 연금금이 쌓여 있는 데도, 미래 재정불안 요소라며 공적연금에 대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이 자동 삭감되는 명목확정기여(NDC)방식의 연금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대신 소득활동을 계속해 연금보험료를 기간 제한 없이 부을 수 있고, 그러면 향후 연금액이 그만큼 인상되도록 만들었다. 연금액이 얼마 안 되는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서는 동일 금액을 모든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이라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만큼만 국가가 보충해주는 선별주의적인 최저보장연금을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70세까지 일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고령자 재직훈련과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 일할 수 있게 시간제 근로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쌓여 있는 연기금을 투자해 투자수익을 얻고, 이를 연금지출에 사용하는 데 그 규모가 공적연금 지출액의 28%에 달한다.⁹⁾ 덴마크는 기초연금만 국가가 책임지고,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기업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적연금을 준공적연금화 하여 노후소득보장이란 중책을 수행하게 만든 것이다.

스웨덴과 덴마크의 사례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할 사회보장제도의 개혁 방향이 어디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면서, 고용을 매개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정 효율화 개혁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은 연금과 의료에 대한 합리화 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연금과 의료는 일반적으로 전체 사회복지지출의 60%~70%를 차지한다. 예산제약이 엄연한 현실이기에, 이 양대 분야는 재정효율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처럼 가용자원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스웨덴 같은 생산적 복지는 꿈도 못 꾸다.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중첩적이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초고령화에 직면해 있는데, 현세대 노인의 빈곤이 큰 문제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없었거나, 가입했어도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던 도입당시 중년층이 노인이 됐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으로 일부 소득보장을 해주고 있으나, 충분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스웨덴식 보충급여형 기초연금제도(소위 기초보장연금)를 통해 풀어야 한다. 이 점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논하자.

미래는 어찌해야 하나? 현세대 노인의 빈곤을 이유로 들며, 국민연금의 급여(소득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문제인 정부의 연금개혁안이나 사회적 합의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연금개혁안이 그러하다. 그러나 필자는 현재의 목표 소득대체율 40%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 독일도 45년 가입기준 38.2%, 스웨덴도 40년 가입기준 36.6%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의 40%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니라, 독일의 22%, 스웨덴의 16%에 훨씬 못 미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9%를 인상해야 한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분(8.33%)를 감안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4%p 정도만 인상가능하다. 지출을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인상,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급여의 자동삭감장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 스웨덴과 독일은 20% 안팎의 높은 보험료율뿐만 아니라, 이미 지출통제를 위해 각각 확정급여(DB)를 확정기여(DC)방식으로 바꾸고,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기여와 급여의 균형을 맞추어 놓고, 이후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지출증가는 노동세대의 추가부담이 아닌 연금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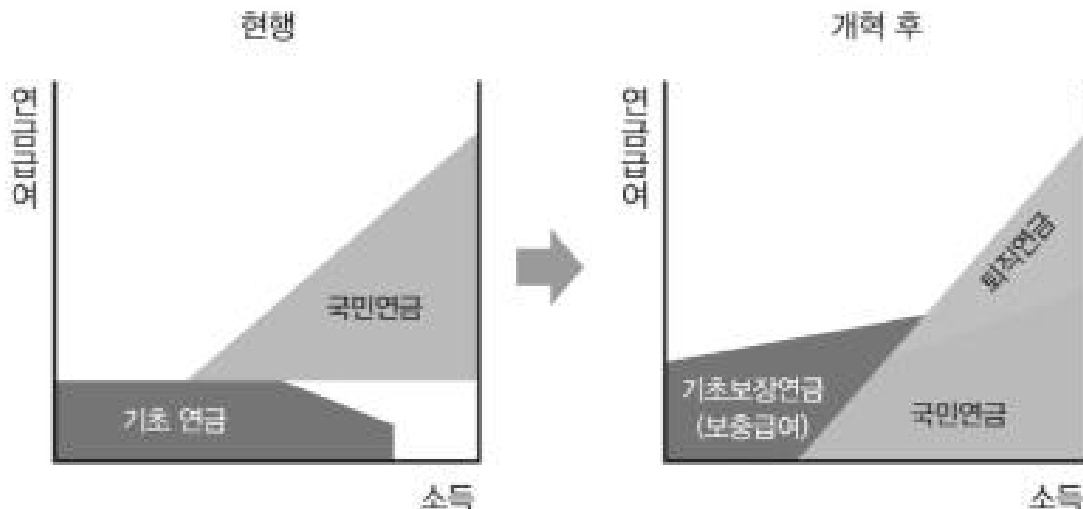
9) 양재진 외, 2019. [사회보장재원 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4장.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IWSR 연구보고서 19-01.

개인의 급여삭감으로 해결하게 해 놓은 것이다. 우리도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701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적립금 (GDP 대비, 37%)을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 당장 털어 쓰자는 주장도 있다. 기금이 사라지면 독일처럼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국민건강보험처럼 그해 보험료 걷어서 그해 써버리자고 주장한다. 독일처럼 연금보험료로만 소득의 22%를 거둘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무화된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 보험료가 이미 8.33%이다. 그리고 9장에서 논했듯이 증세가 용이한 구조도 아니다.

국민연기금은 엄청난 노인부양비를 떠안게 된 후세대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다. 나중에 털어 쓸 수 있어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낮은 보험료 문제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연금지출의 28%를 기금수익으로 충당하듯이, 우리도 기금운용수익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4%p 인상되면, 연기금의 규모를 더 커진다. 그 만큼 기금운용수익을 더 늘릴 수 있다. 지금도 2016년 통계를 보면, 한 해 기금운용수익이 11.7조이다. 당해 년 연금지출액 대비 25.9%에 이른다.¹⁰⁾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보험수리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보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문제를 완화하는데 큰 기여는 할 수 있다. 거대 연기금이 금융시장을 혼란하게 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스웨덴처럼 연기금을 네다섯 개로 분리하고, 해외분산 투자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

<그림 2>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개혁 전후 비교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와 더불어, 덴마크처럼 퇴직연금의 준공적연금화가 병행돼야 한다. 국민연금처럼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지급을 못하게 해야 한다. 퇴직연금이 매달 받는 연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도 안 되고, 국민연금도 얼마 되지 않을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스웨덴식 보충급여 기초연금, 즉 기초보장연금이 제공되는 게 합리적이다. 보편주의를 고집해 중간층 이상 노인에게까지 똑같은 금액을 주는 것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보편주의의 더 큰 문제는 저소득 노인에게 연금 급여를 몰아줄 수가 없기에, 탈빈곤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저소득

10) 양재진 외, 2019. [사회보장재원 구성에 관한 기초연구]. 4장.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IWSR 연구보고서 19-01.

자에게 모자란 만큼 더 많은 연금급여가 집중될 수 있도록 스웨덴식 보충형 기초연금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다.

스웨덴식 보충형 기초연금(기초보장연금)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해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주고 있다. 2019년 2인 빈곤가구를 예로 들면, 생계급여로 월 최대 87만원 (중위소득의 30%), 주택급여로 월 26만7천원 (서울 기준), 교육급여로 등록금에 더해 교재비가 연 29만원 (고등학생 기준) 지급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고, 본인부담금도 면제되거나 50% 감면받는 의료급여를 받는다.¹¹⁾ 2018년 현재, 전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33%를 차지한다. 생계급여 대상자로만 보면, 40%가 노인이다. 이미 유사 기초보장연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를 분리해 내고, 이들을 기초보장연금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근로가능인구가 포함되다 보니, 수급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웬만한 자산이 있으면, 탈락이다. 일단 자산을 현금화해 생활하고 빨리 소득활동을 하라는 취지다. 전혀 기댈 언덕이 없게 될 때 국가의 지원을 받으라는 뜻이다. 게다가 부양의무자 기준도 적용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자기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지만 부자 부모를 둔 일할 나이의 사람은 수급자에서 제외시킨다.

근로가능인구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기준이 원칙적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노동시장에 복귀를 기대할 수 없는 고령자는 근로가능연령대 빈곤가구와 분리하고, 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보충급여형 기초보장연금이다. 보편주의방식의 기초연금은 없애고, 현재 기초연금에 쓰는 연 15조원은 기초보장연금의 재원으로 돌린다. 기초보장연금은 보충급여형이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성숙해서 총연금액이 올라가면, 기초보장연금의 급여는 줄어들게 된다. 초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재정효율성이 좋은 기초연금제도로 할 수 있겠다.

의료보장 부분의 재정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OECD국가 중에 가장 많이 병원에 다니고, 두 번째로 병원에 오래 입원한다. 환자 맘대로 병원을 선택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CT와 MRI를 찍어 낸다. 감기 같은 경증에 쓰는 돈도 막대하다. 2016년 감기 환자는 2,011만 명으로 건강보험에서 1조 7,032억 원을 진료비로 사용했다.¹²⁾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 감기는 따듯한 차 마시며 푹 쉬는 병이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병이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희귀병에 걸려 고통 받는 아이의 수술비와 약값 마련을 위해 모금을 독려하는 TV방송을 자주 접한다. 장애아 재활병원도 못 짓고, 지방에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이 없어 산모가 차를 타고 먼 길을 다녀야 한다. 왜 한쪽에서는 의료서비스가 낭비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필수 의료의 과소 공급되는가?

정치가들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려는 노력을 망기하고 있고, 민간에서 이윤동기에 따라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비 절감시킨다며 비필수 의료까지 급여를 확대하고 있는 문제인 케어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 어떻

11) 복지로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12)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운영실. 2018. “바이러스주의보! 봄철까지 유행하는 감기 손씻기로 예방하세요.” <https://www.nhis.or.kr/bbs7/boards/B0039/25914>.

게 될까? 보건의료지출은 이미 2017년 74조원에서 2018년 84조원으로 1년 만에 10조원이 늘어났다.¹³⁾ 지금 추세대로 매년 10%씩 의료지출이 늘어나면 7년마다 지출액은 두 배가 된다. 2025년에는 168조원, 2032년에는 336조원이 된다.

의료보장 시스템을 합리화하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가용자원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이다.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의사와 환자 양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위험도에 따른 의료보장, 진료비 지불방식의 개편, 혼합진료 금지, 1차 의료기관의 문지기 역할 강화 등이 그것이다.

근로세대 소득보장의 강화

근로연령대 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고용을 늘리고 고용된 사람들의 직업역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사회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먼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급여의 소득비례성을 높여야 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의료급여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기초연금이 메우듯이, 일반재정을 통해 문제해결 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시행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급대상자와 급여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급여를 50만원에서 기초생보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합한 수준으로 인상(서울기준, 78만원)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추가 2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이 60%로 인상되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급여상한액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2019년 현재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200만원이 안 된다. 최저임금 수준이다. 2009년 파산위기에 몰린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 방침에 노동자들이 극렬 저항했다. 이들 노동자들이 자기 소득에 상응하는 제대로 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렇게도 격렬하게 싸웠을까? 30명에 달하는 자살자가 나왔을까? 노동자들의 반대로 제 때 구조조정을 못하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한진중공업 사태도 그러하다. 상한액의 대폭적 인상 (최소 300만원)은 노동자를 위해서도 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동일한 이유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40%를 60%로 올리고, 월 120만원에 불과한 상한액을 월 3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 아이 갖게 되면 생활비가 더 드는데, 10만원 아동수당으로는 턱도 없다. 그런데, 육아휴직하게 되면 소득까지 폭 떨어진다. 특히 중산층은 더하다. 월 120만원으로 생활이 될까?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면 더 손해다. 겁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실업급여와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시행을 위해 도입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나간다. 눈치 보며 더부살이 하고 있는 격이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인 만큼, 스웨덴처럼 부모보험(parental leave)을 따로 만들어 아이 출산과 양육에 따른 사회적 위험과 부담을 대폭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노동력의 재생산과 공급은 기업 활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니, 부모보험의 재원은 스웨덴처럼 기업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부모보험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 자영자와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국민도 포괄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13) 고경환. 2019. “2018년 OECD사회지출 추계 결과” 비공개 발표자료. 사회보장위원회.

일반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필요 재원은 부모보험 목적세로 부가세율을 0.5%포인트 인상하여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연 4조원). 부모보험기금에서 15개월의 출산/육아휴직 급여 외에도, 자녀 간호급여, 결혼 축하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자. 단, 스웨덴처럼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자는 0세아 자녀를 본인이 키워야 한다.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다. 아이 키우라고 두둑한 육아휴직급여를 주었는데, 공보육을 이용하면 이중지원이다. 그리고 0세 아이는 부모가 키우는 게 아이한테도 좋다.

수당을 출산/육아휴직 급여를 개별 고용주의 의무로 하지 않고, 기금을 통해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의 여성고용 회피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부가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면, 결혼의 비용과 출산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최대한 사회적으로 분산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모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새로운 보험료 부담이 생기나, 기존 재원을 활용하면, 신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휴가급여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월 100만원에 달하는 0세아 무상보육료, 그리고 부양가족(아동)공제의 폐지로 생기는 조세지출 절감액을 모두 부모보험에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저것 반찬만 많지 먹을 게 별로 없는 상보다, 메인 메뉴 하나 확실한 게 낫다.

부모보험의 도입으로 인한 육아휴직의 확산은 일자리 나누기 효과와 청년고용 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출산전후유급휴가의 활용률이 높아지고 실제 휴가기간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때, 유급휴가 비용이 사회화되기에 (즉, 부모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출되기에) 고용주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하던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 기업의 대체 인력 고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1년짜리 단기 일자리이겠지만, 청년 등에게 고용의 기회를 높게 된다. 신규취업자는 유급휴가기간만 채용되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자연스레 형성된 경험과 기술은 재취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이동성의 강화

적극적 기회의 제공을 통한 사회적 상향이동성을 높이는 정책설계도 필요하다. 미래 인적자본인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관심을 보여야 한다. 특히, 저소득 가정과 낙후지역의 아동에게 실질적 기회의 평등과 사회적 이동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아동복지서비스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질 높은 공보육의 제공이다. 이에 더해 취약계층·취약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복지서비스의 강화(유아교육, 방과후 프로그램, 공부방, 학자금융자 제도 확대, 이주자와 다문화가정 정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학령기 공교육 강화도 매우 중요한 과제다. 정부 방침대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하고, 외국어/문화/컴퓨터 언어 디바이드(Divide)가 생기지 않게, 영어·중국어 등 어학교육과 예체능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산층 가정 아이가 사교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공교육에서 질 높게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저소득 가정의 아동도 중산층 가정의 아이와 동일한 자기계발 기회를 갖게 된다. 소위 ‘진보’ 교육감들은 영어 사교육을 부추긴다고 공교육에서 영어 교육을 줄이려고 한다. 이는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기계발 기회를 박탈해 계층 간 간격을 넓힐 뿐이다. 무엇이 ‘진보’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평생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먼저 공공근로에 치우쳐 있는 적극적노동시장정

책을 훈련과 고용서비스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고용을 유지하라고 영세/중소기업주에 주는 각종 보조금은 저생산성과 ‘좀비’ 기업을 낳는 부작용이 있다. 경쟁력을 잃은 영세/중소기업이 자연스레 구조조정 되게 하고, 수준 높은 교육훈련과 실업급여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게 스웨덴 방식이다. 제대로 된 교육훈련 기관도 필요하다. 전문대와 전국 각지에 있던 구(舊)산업대 (**과학기술대)를 평생직업교육기관화 해야 한다. 이런 평생교육기관에 입학하면 고용보험과 연계하여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하고 등록금은 100% 무상으로 해야 한다. 현재 직업교육과 무관한 국가장학금(반값등록금제)는 중위소득 이하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가용자원을 평생교육 훈련 쪽으로 돌려야 한다.

좋은 대학에 가거나, 공무원 시험과 대기업 공채에 합격하는 것 외에, 인생에서 Second Chance, Third Chance가 보장돼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에게 훈련/교육을 위한 휴직/퇴직/근무시간 단축의 권리를 부여하고, 부분 실업급여 제공을 통해 교육훈련 기간 중 소득보장을 도와야 한다. 생애주기에 걸쳐 교육/훈련이 보상 받도록 (즉, 교육 프리미엄이 늘 작동하도록) 연공급이 아닌, 직무급이나 성과급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어 입출입을 보다 자유롭게 해야 한다. 상향이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다.

포플리즘이 아닌 복지국가 발전을 위하여

기본소득은 복지급여에 비해 소득보장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그리고 소비증대 효과 등이 모두 다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정치가들이 늘고 있다. 사실 기본소득이 소득보장, 소득재분배, 그리고 소비증대 효과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급여만 못하다는 것은 이해하는 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아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미래 일자리 없는 사회 대비, 사각지대 해소, 소비 진작 등 온갖 이유를 달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소득만이 갖는 정치적 효과를 간파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 복지급여는 5,200만 전체 국민 중에 소수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수혜자, 아동수당 수혜자, 실업급여 수혜자는 항상 소수이다. 누구나 아프면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소득상실의 위험에 빠지면 원칙적으로 누구나 급여를 받는 보편 보장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당장 복지 급여를 받는 수혜자는 소수다. 반면 기본소득의 수혜자는 언제나 5,200만 전 국민, 즉 전체 유권자다. 기본소득의 소득보장 효과가 떨어지고, 사각지대 해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분배 효과와 소비증대 효과가 모두 열등하더라도, 정치가 입장에서는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지지 동원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설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이 국가지도자로서 넘어서지 말아야 할 금도를 넘어서며, 기본소득 깃발을 휘두르고 있다. 한국은 현재 의료보장을 제외하고는 책임보험 수준의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보험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적 위험과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욕구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수요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일로에 있는 복지비에 더해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해야하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자면 기본소득 같이 사회·경제적 효과가 떨어지는 제도에 가용자원이 낭비되어서는 곤란하다. 정치가들의 표 계산에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토 론 문

윤 홍 식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기본소득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먼저 양재진 교수의 발제문을 무척 재미있게 읽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궁무진한 논쟁의 주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논의 방식을 포함해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기본소득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그러나 제가 기본소득에 제기한 문제의 대부분은 기본소득이 잘못된 대안이라는 주장이기 보다는 기본소득이 한국 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 풀어야할 과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히 제시하라는 것이었다(권력자원, 생산체제 등).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 복지국가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실상이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보다 명징해졌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제가 역진적 선별성이라고 부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 고용과 임금을 보장 받는 집단을 주 대상으로 제도화 되어 있는 고용보험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쳤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대책 없이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물론 이런 상황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상황이라기보다는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한국 복지국가의 누적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 논란은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하는지 중요한 질문 던져주었다고 생각한다. 고용기반 고용보험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전환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에 기본소득 논의는 매우 반가운 논란이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검토되는 것은 기본소득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한국 복지국가의 경로에 매우 유의미한 의미를 준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양재진 교수의 발제문에 대한 몇 가지 논평을 해보자. 발제문의 모든 단락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쟁점을 담고 있어 이를 모두 토론하기는 시간의 제약이 너무 크다. 그래서 큰 틀에서 발제의 핵심 논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자.

먼저 발제문의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기술변화(소위 4차 산업혁명 또는 제러미 리프킨의 3차 산업혁명)가 고용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기본소득 논자들의 입장과는 상이하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디지털 기술변화가 일자리를 줄일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발제문의 입장은 후자의 입장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고용관계에 기초한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반면 기본소득 논자들은 디지털 기술변화가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이고, 더 이상 고용을 통한 분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용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배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그러나 발제문과 기본소득 논자들의 주장이 적절한 진단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발제문이

전제한 것처럼 과거 OECD 고용 자료를 보면 기술변화에도 고용율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높아졌다. 제2차 대전이후 기술변화를 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여기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술변화는 노동대체형 기술발전이 있고, 노동보완형 기술발전이 있는데 1990년대 이후, 특히 201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된 기술발전은 기술경제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노동대체형 기술발전의 성격이 강하다. 반면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노동보완형 기술발전의 성격이 강했다고 한다. 그 이전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러다이트 운동이 있던 산업혁명 당시는 기술발전이 노동대체적 성격이 강했다. 실제로 산업혁명 당시 기술발전으로 인해 많은 숙련공들이 일자리를 잃었던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장기라는 것이 무려 70여년의 시간이었다. 실제로 플라잉 셔틀 같은 직조 기술의 발전으로 더 많은 방적사에 대한 수요가 창출되기 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이 버티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다.

다만 총고용량으로 보면 일자리가 줄었는지는 의문이다. 노동대체적 기술발전 시기에는 중간 정도의 숙련 일자리가 감소하는데 대신 고숙련 일자리와 저숙련 일자리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기술변화를 기술변화 주기상 노동대체형 발전 시기라고 보면 핵심은 일자리의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의 양극화가 두드러진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양태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룩셈부르크와 핀란드는 중간 정도의 숙련을 요구하는 일자리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고,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폭도 작았다. 대신 고숙련 일자리의 증가는 높았다. 반면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반대의 경우였다. 현재 한국의 모습은 두 집단의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결론은 유사하다 고용된다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불평등을 줄이는 역할을 더 이상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1980년대 이후 우리가 직면한 자본주의의 현실이다(물론 국가 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은 1990년대 초중반을 지나면서 본격화되었다). 더욱이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산성 향상이 지체되면서(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운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자리 증가 속도가 둔화되었다.

기본소득 논자들은 기술변화가 숙명과 같은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고정된 것이라는 결정론적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기술의 방향은 정해진 것이 아니다. 현재 일자리를 대체하는 자동화는 상당부분 우리 시대의 관행, 다시 말해 제조업에 기반한 사회체계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다. 예를 들어, 자동화를 위해 로봇을 설치하면 투자비용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를 고용하면 사회보장세를 내야한다. 또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술혁신은 주로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데 맞추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변화가 노동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결정론에 입각해 미래를 예측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가능성 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일자리 감소를 전제로 사회보장제도를 설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며, 일자리 유지·증가를 전제로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20세기 사회보장제도가 과거 같이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을 포괄할 수 없다면, 현재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면한 사회적 위험에 보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더욱이 부가가치 창출에서 노동자의 몫이 갈수록 감소한다면, 임금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점증하는 불평등을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1980년대 초 제조업 매출 대비 임금 비중은 50%였지만, 2010년대 초반이 되면 그 비율은 10%로 낮아

졌다. 임금소득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가 갖는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포기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고용관계에 기반해 소득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이행기에는 고용관계와 무관한 사회보장제도와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가 상호보완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이행기 제도설계를 하는 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보면 기본소득 논자들의 주장과 이를 반대하는 발제문의 주장 모두 받은 적절하고 받은 적절하지 않는 전제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안정기(균형)는 매우 제한된 시기(짧은 순간)만 달성되었고, 대부분은 상이한 특성이 공존하는 이행기였다.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조화하는데 이런 인식이 절실하다.

두 번째는 기본소득 논자들과 반대논자들(발제문) 모두 대안을 세계자본주의의 보편성과 한국 사회의 특수성에 기초해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은 한국 사회의 발전과정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대안이다. 많은 사람들이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이 증가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은 한 번도 서구와 같은 제조업에 기반한 완전고용에 가까이 다가선 적이 없다. 물론 유사 포디즘이 성립한 시기가 있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길게 잡아도 10년이다. 이 시기에 전에도 한국은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했고, 이 시기에 이후에 그렇다. 보수적인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조업 고용의 정점은 1988년이 이었고, 이는 북서유럽의 제조업 고용이 전성기에 이르렀던 시기의 60%를 전후한 수준에서 탈산업화가 이루어진 것이다(이른 탈산업화, 일명 조속한 탈산업화라고 불리는 현상). 다시 말해, 현재 북서유럽과 같은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갖출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여전히 전통적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대안이 보편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북서유럽과는 다른 제도적 배열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문제는 우리만 직면한 것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부분 이른 탈산업화를 경험하는데(한국 보다 제조업 고용이 정점에 이른 시점에서 제조업 고용비율이 낮았다), 개도국은 북서유럽 형식의 사회보장제도의 보편성이 한국보다도 더 낮다. 그래서 개발도상국,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 보다 기본소득 형식의 무조건적 현금급여가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더 긍정적이라는 경험적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한국 산업화의 이러한 특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공적 사회보장제도에서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배제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대규모 자본 투자를 통해 노동 숙련 대신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도 이러한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산업구조, 생산체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한국적 특수성에 맞게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든지, 아니면 생산체제의 특성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즉 생산과 무관한 방식으로 분배제도를 설계하는 방식, 즉 기본소득 중 하나(또는 둘 아니면 셋 모두?)이다. 그런데 산업구조를 개혁해 노동숙련에 기반한 성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최소한 20~30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 대안으로 노동과 무관한 소득보장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전환적 기본소득(나는 보편적 사회수당이라고 부르는)의 유용성이 존재한다.

산업구조 개혁 없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통해 보편성을 넓히는 작업도 하나의 방법이다. 단

발제문에서 선호하는 고용관계에 기반해 보편성을 확대하는 방식은 지난 20여 년 동안 경험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 년 간 자유주의 정부(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물론 보수정부(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두리누리사업 등과 같은) 작은 변화를 제외하면 가시적 성과를 내오지 못했다. 다시 말해, 현재의 산업구조, 생산체제, 노동시장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회보장제도만으로는 역진적 선별성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발제자가 언급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제도의 소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구조, 생산체제, 노동시장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안정적 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조 자체를 바꾸던지 아니면 안정적 고용관계에 기반한 사회보장이라는 패러다임을 바꿔야하는데, 이렇게 정책의 구조와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면, 이행기라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기간을 한시적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보편적인 현금지원 제도는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해 왜 한국에서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 지원 정책이 쏟아졌는지에 대한 생각도 이러한 문제인식에 닿아 있다. 발제자의 지적처럼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한국만이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 ‘특별정액급부금(特別定額給付金)’이란 명목으로 국민과 거주외국인을 포함해 1인당 10만엔(2020년 7월 15일 기준으로 1,122,925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미국은 긴급재난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을 1인당 성인 최대 1,200달러에서 17세 미만 아동 500달러를 1인 연소득 최대 9만9천 달러까지(최대 금액은 7만5천 달러 이하) 달러, 부부합산 연소득은 최대 19만8천 달러(최대 금액은 15만 달러 이하)까지의 소득자에게 지급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의 가구의 실질 중위소득이 \$61,937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소득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 반면 북서유럽의 복지국가 중 어느 곳도 한국, 일본, 미국 등과 같은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북서유럽 복지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보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실직이나 소득상실 등에 대해 기존의 사회보장제도를 일부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반면 보편적 사회보장제도를 갖고 있지 못한 한국, 일본, 미국은 코로나19라는 재난에 대응해 보편적 재난지원금이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강한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것이다. 약한 복지국가를 단번에 강하게 할 수 없다면, 불가피한 단기적 대안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인다.

완전기본소득도 온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생산관계와 무관한 분배제도를 산업화 이래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그렇다고 갈 수 없는 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단 조건이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역사를 보면 보편성은 정액급여에서 중간계급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소득비례에 기초한 보편성으로 발전했는데, 이를 다시 정액급여 방식의 급여체제로 바꾸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물론 부분기본소득이나, 전환기적 기본소득은 이런 긴장관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기본소득 논자들이 이미 이러한 제도를 복지국가의 하나의 소득 보장 프로그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기존의 생활수준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폐기할 필요는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발제문은 매우 많은 논쟁지점을 담고 있어서 여기서 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다.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논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것은 다른 주장을 비판하기 전에 그 주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상대의 주장을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야 비판과 논쟁이 가능하다. 다른 주장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토론 할 필요가 없고, 이런 주장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안은 한 사람의 대단한 아이디어에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비판과 반비판을 통해 집단적으로, 들을 귀 이자를 세 개나 겹쳐 놓은 통섭(統攝)의 과정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논쟁의 과정에서 초기에 상대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고, 진전된 비판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본격적 논쟁이 2016-2017년부터 시작되어 이미 3~4년이 되었기 때문에, 초기의 논쟁에서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가 상당 부분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 이전에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것이 있다. 초기 기본소득 논의는 주로 기본소득의 이념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후 논의과정에서 기본소득 논자들은 이념형으로서 기본소득 논의를 접어 두고 현실적인 안들을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완전기본소득의 급여수준도 중위소득 30%수준에서 시작해 5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축소했고(이상형으로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는 없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를 완전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더 낮은 수준의 부분기본소득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전환적 기본소득이라는 명칭을 더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에 대한 정확한 비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완전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낮은 수준으로 모두에게 지급하는 부분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산소득조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는 ‘전환적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지 말이다(혼동이 없기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개념을 그대로 사용했다). 공유부에 대한 공동소유에 기반 하는 분배 원리에 충실한 것은 완전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인데, 이를 비판하는 것이면 부분적으로 타당한 것들도 있지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지급되는 전환적 기본소득을 이야기한다면, 이 전환적 기본소득의 원리는 공유부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사회수당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전환적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은 보편적 사회수당에 대한 비판과 같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판의 화살이 어느 표적을 향하는지 분명히 적시하고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하나는 기본소득 논자들에 대한 당부다. 대안적 분배체계로서 기본소득을 복지국가의 하나의 소득보장 프로그램으로 격하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것이다. 대안체제로서의 기본소득 논의와 현실 제도로서 기본소득(부분 또는 전환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최근 논쟁은 현실의 하나의 제도로서 ‘기본소득’이라는 논의에 집중하면서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대안체제(체제변혁)의 성격을 탈각시키고,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의 여러 제도 중 하나가 되면서, 기본소득 논쟁이 현재와 같이 기능적 문제로, 비용-효과성이라는 신자유주의 프레임에 갇혀버렸다.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위해 대안체제로의 힘을 제거해 버리는 오류를 범했다고 생각한다. 제2차 대전이후 사민주의건, 보수주의건 현실 자본주의에서 보다 더 평등한 분배를 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민주의에게는 그 길이 사회주의라는 대안 체제로 가는 운동의 과정이었

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었고, 보수에게는 사회주의의 위협으로 자본주의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는 대안체제가 숨 쉬고 있었기 때문이 다른 생각을 가진 두 세력이 각자의 생각을 갖고 복지국가라는 한 배에 탄 것이다. 나는 대안체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현실 자본주의에서 기본소득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

전환적 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이 이상적 기본소득으로 가기 위한 잠정적 정거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안체제로서의 기본소득의 이상을 축소시키면 안 된다. 권력자원의 형성도 대안체제의 이상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한 것이다. 더불어 전환적 기본소득과 부분기본소득이 이상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잠정적 정거장이 될 수 있을지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증의 문제라는 점도 명확히 하고 싶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도 이러한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덧붙여 많은 비판이 기본소득 논자들이 부정했거나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 논거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덕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 론 문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기본소득 논쟁은 복지의 ‘정치 소모품화’

기본소득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두 전문가의 발제에 동의
복지인지 정치인지 헷갈리는 상황. 기본소득에 비판적이던 보수 정당까지 가세해 혼란
을 부채질. 기본소득제 확산 과정이 2010년 이후 이어져온 무상복지 경쟁을 연상시킴.
특히 2012년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공약한 무상보육을 연상시킴. 갑작스런 확대로
질이 따르지 못해 부작용이 여전함.

기본소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스위스·핀란드도 시행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음. 설령 두 나라가 시행한다 해도 국가
의 규모가 달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

180조원의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큰 고민거리
지금도 중앙정부-지방정부, 중앙정부-중앙정부, 중앙정부-민간, 지방정부-민간이 뒤
죽박죽 상태.

현금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남발하면서 뒤죽박죽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
여기에서 기본소득이 등장했는데, 이로 인해서 황을 정리할 기회가 사라질 것

한해 복지에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쓰면서 복지 만족도는 떨어지는 상황.
저소득층 바닥 취재를 가면 안전망에서 벗어난 극빈층이 너무 많아.
정부 통계로 93만 명이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보다 많을 듯.

복지 확대에 소외된 저소득층이 여전히 많다.
정부가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로 연 10조원 이상 소요. 이 정책 하나에만 10조원 들어간다.
부양의무자 축소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고용보험 사각지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의료 사각지대, 돌봄 사각지대(노인·장애인·
중증재가환자 등)

이런 사각지대 줄이기에 정치권이 앞 다투어 나서야할 판에 기본소득 논쟁에 힘을 빼면
안전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의 고통에 눈을 감는 꼴이 돼.
차라리 코로나 때 극명하게 드러난 상병수당의 구멍을 먼저 메우려는 논의가 훨씬 정
의롭다고 판단해.

복지=정치는 어쩔 수 없다고 본다. 2010년 이후의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
하지만 복지<정치, 복지가 정치의 부속품, 정치의 소모품이 돼서는 곤란.
기본소득 논쟁과 토론은 할 수 있으나 더 급한 사각지대 토론도 함께 이뤄져야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건전한 토론을 기대

부 록

- ◆ 연구회 소개
-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공지사항
- ◆ 협력기관

■ 연구회 소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

● 설립목적 :

대한민국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데 필요한 복지정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계몽 활동 및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파악 및 해소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고 이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목적으로 함.

● 연 혁 :

- 2009. 10. 15 창립
- 2011.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경기도 제 1237호)
- 2012. 10 법인설립허가 (경기도 제 2012-01-90호)
- 2013. 07 기획재정부 지정기부단체 등록
- 2014. 09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시민사회소통부 협력단체
- 2014. 11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보건복지부 제 196호)
- 2013~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시니어LIFE코디네이터 자격증 수여/보건복지부 승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5-001578)
- 2009. 10~ 분기별 복지 현안정책 토론회 개최
- 2014~ 성남시 사회복지박람회 부스 운영 참가
- 2015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
- 2015 휴먼네트워크 멘토링 지원사업
- 2016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통일부 『통일박람회』 참가-부스명: 통일이랑 복지랑 step by step!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방출물 모니터링사업
『제 7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참가-부스명:오병이어를 만드는 사람, 사람들
- 2017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여성가족부 양성평등지원사업 선정
나눔국민운동본부 권역별 나눔교육 수행기관 선정(보건복지부)
제 8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하반기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선정
- 2018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
경기도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선정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9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부스참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 기술 및 조달전시회 컨퍼런스
- 2019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5년 연속)
제 10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부스 운영 (10.5~6일)
제 5 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공감여행(8.17~18)
제 5 회 중장년세대 Begin 한마당(9.28)
창립 10주년 기념 사회복지미래를 위한 Talk 콘서트 (11.07)
- 2020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인활동지원사업 선정(6년 연속)
나눔교육운동본부 생애주기별 나눔교육 선정 (보건복지부)
제 6 회 (그룹홈)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8.25~27)
제 6 회 중장년세대 Restsrt 한마당(10.24)

■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

● 2020. 07. 21 (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제 : **기본소득, 복지정책인가? 포퓰리즘인가?**

제 1주제: 기본에서, 기본소득제를 생각한다. 기본소득제를 비판하는 3가지 이유

주제발표자 : 홍 경 준 교수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오 건 호 공동위원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제 2주제: 한국복지국가 발전, 사회보장의 강화로 풀어야

주제발표자 : 양 재 진 교수 (연세대 행정학과/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소장)

토 론 자:

1 : 윤 홍 식 교수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2 : 신 성 식 복지전문기자 (중앙일보)

개회사: 김 상 훈 국회의원

축 사: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격려사: 이 갑 산 범사회시민단체연합 상임대표

1부 사회: 조중근 회장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안전부

● 2020. 06. 3 (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주제발표자: 항명진 교수(고려대학교 공공사회학과장/복지대학원 주임)

토 론 자:

1 :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 사공정규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3 : 공선희 전문연구위원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4 : 임강섭 팀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1부 사회: 김기영 교수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부 좌장: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김 상 훈 국회의원

협력단체: 사)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사)서울시보건협회

한국사회봉사연합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 지난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티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 3)복지 TV 주소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l=34414&index=942&gotopage=4

복지TV:

<https://tv.naver.com/v/14221827>

※관련 언론 기사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91324954199726018> 전기신문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190> 백세시대신문

<http://www.r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373> 농촌여성신문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8585 한국NGO신문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ASM/323188/view> 농민신문

<http://sundaytimes.kr/View.aspx?No=864001> 선데이타임즈

<https://www.dailian.co.kr/news/view/895050?sc=Daumlogo> 데일리안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837> 경인매일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7956&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메디파나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8083> 의학신문
<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53431> 메드포뉴스
http://www.getnews.co.kr/view.php?ud=202006031526242324ecd436290_16 글러벌경제신문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84830> 내외일보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6731> 복지연합신문

● 2019. 11. 7(목)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 제 : **사회복지 전문가가 말하는 대한민국 사회복지 현 좌표는?**

토크발표자:

- 1 : 차흥봉 대표이사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전 보건복지부 장관)
- 2 :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제 9. 10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3 : 성규탁 교수 (미국남가주대학교 석좌교수/ 글로벌 문화실천나눔포럼 상임대표)
- 4 : 조성철 이사장 (한국사회복지공제회설립명예 이사장/ 제 17. 18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1부, 3부 사회: 강신성 박사

2부 토크콘서트 진행: 이정숙 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fnestv.com/news/newsview.php?ncode=1065590229774209> 파이낸셜경제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111116168042040&outlink=1> 돈이 보이는 스페셜 뉴스 Money S
http://www.ngonews.kr/sub_read.html?uid=114935 한국NGO신문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735> 충청일보
<http://www.dailian.co.kr/news/view/841945> 데일리안
<http://www.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72889> 엔지티브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73518309189542096> 전기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526> 복지연합신문

● 2019. 07. 17(수) 국회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

주 제 : **포용적 복지 정책과 지속가능성**

주제발표자: 김용하 교수 (순천향대학교 금융경제학과)

토 론 자:

- 1 : 조중근 교수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 2 : 신소정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치매전문재활학과 학과장)
- 3 : 김동섭 논설위원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63944931183318035> 전기신문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2406 한국NGO신문
<http://www.focus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30679> 포커스투데이
<http://www.globalnewsagency.kr/news/articleView.html?idxno=124572> GV글로벌뉴스통신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881> 백세시대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811721/?sc=naver> 데일리안
<http://www.nw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278> 내외통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1244> 복지연합신문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35> 실버아이뉴스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2348 성남일보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7906> 국제신문

● 2019. 05. 09(목)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발표자: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 1 : 김미령 교수 (대구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장)
- 2 : 이상이 교수 (복지국가소사이터티 공동대표)
- 3 : 황남희 연구의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후 원: 행정안전부

※관련 언론 기사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1930?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190509143644931?f=o> 국가기간뉴스 통신사 연합뉴스
<http://moneys.mt.co.kr/news/mwView.php?no=2019051011178029947&outlink=1> 머니S
http://www.wngo.kr/sub_read.html?uid=111052 한국NGO신문
<http://www.dailian.co.kr/news/view/794496> 데일리안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235> 백세시대신문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0038> 복지연합뉴스
<http://www.silver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75> 실버아이뉴스
<http://www.ngonews.com/news/article.html?no=13751> 시민운동연합신문
<http://electimes.com/article.php?aid=1558086391179232018> 전기신문
http://www.snillbo.co.kr/sub_read.html?uid=40346 성남일보

● 2018. 10. 16(화)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제 1 주제 : ‘노인 자살률 낮출수 없나?’-대인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자: 현 명 호 교수(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토 론 자: 양 두 석 교수(안실연 자살예방센터장)

제 2 주제 : ‘한국 노인의 고령화 과정에서의 자살 위기진단’
-나이 들에 대한 사회적 통증과 배제-

주제발표자: 박 지 영 교수(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 론 자: 김 종 래 대표(복지연합신문)

1부 사회: 문 승 권 박사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조 성 철 前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 원: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복지TV, 백세시대신문, 한국고령화산업포럼, 생명연대

● 2018. 05. 02(수) 국회의원회관 제 3 간담회의실

주 제 : ‘정치제도의 개혁, 사회복지발전에 왜 필요한가?’

주제발표자: 홍경준 교수(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사)좋은나라 연구원 이사장)

토 론 자:

- 1 : 양재진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행정학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 2 : 정종순 기자 (중앙일보)
- 3 : 노대명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부 사회: 이 진 박사 (국회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2부 사회: 김진학 박사 (본 연구회 이사/ 전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2017. 10. 17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과 건강 - 장기요양보험과 중장년 실업대책 및 재교육-

제 1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선진적 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선우덕 명예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서동민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조선일보)

3) 유승호 교수 (건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성북구치매지원센터장)

제 2주제 : 중장년 실업대책과 재교육운영방식 모색

발표자 : 김영생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토론자 : 1) 한국은 초빙교수 (숭실대학교)

2) 최상덕 연구위원 (한국교육개발원)

3) 지은정 부연구위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사)좋은나라연구원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 2017. 06. 29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기조 발제 및 좌장: 노인복지정책 방향:고령인력 참여복지(Smarter Ageing)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발 표 1 : 사회복지서비스 과제: 복지체감도와 현실성

- 김 미 혜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2 : 문재인정부의 노인 건강과 돌봄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전 용 호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발 표 3 :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과 복지재원 조달방안

-김 재 진 선임연구위원(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리더십한림원,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 한국사회복지포럼

후 원 : 행정자치부

● 2017. 02. 23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프리미엄 특강 1. 한국 복지정책의 효율성-균형의 길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회 원장

프리미엄 특강 2 한국사회복지 미래와 과제

- 김진수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2016.12.02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위기의 한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 1주제 : 일과 빵의 균형개혁

발표자 :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토론자 : 김도형 (한림대학교 겸임교수)

제 2주제 : 특권과 반칙없는 공정사회

발표자 : 고재방 (전 교육부 차관보)

토론자 : 최영관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1, 2 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공 동 주 최 : 리더십한림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6.11.24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2016 청소년유해방송물모니터링사업 결과 보고 겸한 토론회

주제발표 : 성운숙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자 : 1) 김경수 대학생(단국대학교 경영학과)

2) 최옥주 교수(건국대학교 영육아보육학과)

3) 박열규 강사(경민대학교 효충교육원)

4) 박찬균 편집국장(복지연합신문)

5) 한병재 감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소)

6) 양혜지 간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사 회 : 박미출 원장(한국정책연구원)

후 원 : 여성가족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 .10.26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고령화시대의 보건의료 과제와 정책제안

주제발표자: 이진석 교수(서울대 의대)

토 론 자:

1) 이진한 차장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2) 정순돌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은자 센터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으로연구실 보건의료정책연구실)

4) 최기춘 실장(건강보험공단 보험정책연구실)

후 원 : 행정자치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6.06. 21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주 제 : 중장년층의 주거복지 정책과제와 대안

발제 1 : 신성식 기자(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 부국장)

발제 2 : 이연숙 교수(연세대학교 주거복지연구단 단장)

패널 1: 박신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

2: 구혜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박재만 과장(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1부 사회 : 고은지 박사(본 연구회 이사/ 어린이집 원장)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국민대통합위원회

* e-run TV인터넷 생방송, 데일리안, 한국 NGO 신문 외 5개 언론보도

● 2016.02. 03 국회의원회관 제 2 소회의실, 공동주최: 이주영의원실

주 제 : 중앙-지방간 복지재정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주제 발표자 : 류진석 교수(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1 : 신성식 중앙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논술위원)

2 : 김태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

3 : 천우정 심의관(국회사무처 행정법제)

4 : 박인환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5 : 고경환 실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축 사 :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김득린 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송암복지재단 이사장

1부 사회 : 조명숙 교수(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국회방송, 한국정책방송 중계, 성남일보, e-runtv 인터넷 생중계

*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에 노출 됨

● 2015. 10. 22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 현황과 제안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주섭 한국고용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자 :

1 : 이준우 교수(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 김정태 센터장(서울시 도심권인생이모작지원센터)

3 : 김동준 센터장(전경련 중장년일자리 희망센터)

4 : 정양범 부장(매일경제 생애설계센터 센터장)

5 : 이수민 (국민연금서울북부지역본부 본부장)

축 사 : 서상목 前 보건복지부장관/ 지속기능경영재단 이사장/ 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최옥주(본 연구회 부회장/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대통령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 2015. 7.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 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정경희 센터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

토론자:

1 : 김현수 박사(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 팀장)

2 : 이상철 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

3 : 김경록 소장(미래에셋은퇴연구소)

축 사 : 김영래 현 아주대 명예교수/ 전 동덕여대 총장

조성철 본 연구회 고문/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

1부 사회 : 고은지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회 : 이정숙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후 원 : 행정자치부

협 찬 : 국민연금공단

*** 연합 외 12개 언론 기사

● 2015. 2. 26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중심으로

(*토론회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

주제 발표자 :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 고수석 연구위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2 : 유근춘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 김은주 소장 (통일준비위원회 사회문화분야 전문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소)

4 : 김원섭 교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5 : 은성호 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과)

축 사 : 유 지 수 총장(국민대학교)

1부 사 회 : 조명숙 교수 (본 연구회 부회장)

2부 사 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4. 10. 22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토론책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존, 전수,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 20조에 근거한 요청으로 제공)

주제 발표자 : 김진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

2 :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 : 유근형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축 사 : 박범진 이사장(미래정책연구소/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고문)

사 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2014. 6. 20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주제 발표자 : 황명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 장 :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남서울대학교 교수

토론자 :

1 : 양점도 교수 (한국복지행정학회 회장/ 경북대학교 교수)

2 : 구종희 석좌교수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3 : 양성근 회장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4 : 권오영 변호사 (인천시 사회복지협의회 부회장)

5 : 이동우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축 사 : 최성균 회장(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사 회 : 김준경 교수(남서울대학교)

● 2014. 4.30 토론회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관 501호

제 1 주제 ‘저출산 원인과 대책’....양찬희 과장(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제 2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이삼식 박사 (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제 3 주제 ‘출산장려를 위한 보육 및 일.가정 양립정책’

.....도미향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남서울대학교 교수

좌 장 : 김한곤 회장(한국인구학회/ 영남대학교 교수)

토론자:

1 : 박미숙 과장 (천안시 여성가족과)

2 : 김태희 교수 (백석문화대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장)

3 : 이명숙 교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 이은하 분과장(천안시 어린이집 연합회 가정분과)

축 사 : 공정자 총장 (남서울대학교)

주 최 :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천안시, 남서울대학교

후 원 : 보건복지부

● 2013. 11. 14 (목)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주제 발표 : 강명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관퇴치회)

토론자:

1) 박병현 교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태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병수 소장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축 사 : 조성철 회장(한국사회복지사협회)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국민연금공단

1부 사회 : 김혜숙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3. 7. 5 (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주제 발표 : 안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토론자 :

1)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2) 최 군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사회복지학과)

3) 이창곤 소장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4) 유종일 교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5)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현대자동차

1부 사회 : 정운경 소장 (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본 연구회 운영위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2013. 3 7(목) 사단법인 허가 및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주 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

주제발표 : 허준수 교수(숭실대 사회복지학부/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토론자 :

- 1) 신성식 기자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
- 2)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공모 선정)
- 3) 현진권 소장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4)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 5) 김명훈 박사 (한국사회복지사회협회 자격제도위원장/강남세브란스병원사회사업팀장)
- 6)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축시낭송 : 정윤경 (본 연구회 운영위원)

후 원 : 국민건강보험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영동대학교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2012. 10. 25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주제 발표자 : 신 영 석 부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 1)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2)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3)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4)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5)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6)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양근 강남대학교 부총장 /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훔플러스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2012. 6. 26.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주제 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 2)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 3)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축 사 : 심윤중 총장(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임성택 총장(그리스도대학교)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2. 3. 9.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주제 발표자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2. 허준수 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송실대 사회복지학과)
3. 이정한 과장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4.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5.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 인 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구 본 홍 사장 (cts기독교TV)

최 란 이사장 (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협 찬 : 대구은행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2011. 12. 20 창립 2주년 겸한 토론회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주제발표: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1) 강학봉 사업본부장 (사회공동모금회)
- 2) 임혜성 팀장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
- 3) 곽대석 사무국장 (cj 나눔 사무국)

4) 김현옥 회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5) 안명옥 前국회의원/나눔공동체

축 사 : 차흥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후 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축 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Memory'(추억), <갯츠>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연합 및 언론사 6기사보도

● 2011. 9. 2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주제발표자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토론자 :

1.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4.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선무

축 사 : 심윤종 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1부 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 뉴시스 및 연합 등 5개 언론사기사

● 2011. 6.14 토론회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주제 발표자 :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토론자 :

1)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2)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3)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4) 최용민 님 (베이비부머해당 토론회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축 사 : 김성이 前보건복지부 장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본 연구회 고문)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2011. 2. 17 토론회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토론자 :

1. 정영훈 과장 (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2.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3.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4.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축 사 :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오영숙 총장(前세종대총장)

축 가 : 장선주 (바리톤). 이동형(테너)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일리, 조선일보

● 2010. 10. 01 토론회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주제 발표 :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토론자 :

1.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2.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3. 곽순헌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4.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축 사 : 차 흥 봉 前보건복지부 장관 (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후 원 :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0. 07. 12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주제 발표 : 정무성 원장 (前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위원)

토론자 :

1. 박헌준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2.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3.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4. 박찬민 총괄실장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5. 윤 준현 대표 (주)에이스푸드
6.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예비사회적기업)

축 사 :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축사문 보내주신분 :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을 통해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1부 사회 :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2010. 02. 25 토론회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주제 발표 : 백종만 학장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토론자 :

- 1)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 2) 장항만 사무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
- 3) 이애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4)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 5)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축 사 : 장석권 前단국대 총장

김경우 회장 (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2009. 12. 10 오전 11시,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주제 발표 : 강욱모 교수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자 :

- 1) 김병숙 교수 (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2) 김창남 교수 (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3)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4) 정무성 교수(송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축 사 : 박범진 前 총장(한성디지털대학교/ 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 공 지 사 항 ▣

1. 2020 년 정책토론회

- 일 시 : 2020 년 10 월 중 오후 2시~오후 5시
- 장 소 : 추후 공지

2. 청소년과 중장년층이 함께 하는 멘토링 제주공감여행

- 일 시 : 2020. 08. 25~27
- 장 소 : 제주
- 멘티 청소년 20 명, 멘토 중장년층 20명

3. 나눔 확산을 위한 나누미 교육

- 일 시 : 2020 년 7월 17일 1차, 7월 28일 2차, 7월 30일 3차
- 장 소 : 추후 공지

■ 협 력 기 관 ■

유한대학교 (총장 이 권 현)
사회안전범국민포럼 (상임대표 백 봉 현)
사)화순군 귀농귀촌정보센터(센터장 전 승 규)
사)한국사회교육복지회 (대표 최 용 희)
사)한국유스호스텔 연맹(총재임 성 준)
서울문화예술 대학교 실버문화경영학과(학과장 조경훈)
사회복지교육실천포럼(회장 성 규 탁)
사)여성자원금고 (이사장 김 근 화)
사) 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박 춘 선)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센터장 강 경 아)
남서울대학교 복지경영대학원 코칭학과(학과장 도 미 향)
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과장 강 현 정)
리더십 한림원 (원장 정경배)
휴먼서비스아카데미 (원장 최 은 미)
대한민국리더스포럼: 배려와 섬김 (회장 박 창 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정 연 보)
사)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김 광 훈)
비)아동안전위원회 (회장 이 제 복)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 후원계좌

1005-702-640482(우리) 예금주: 사단법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과제’((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복지의 이상과 현실’(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 2014.10.22 『공무원연금.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2015.2. 26 『남북한 통일 후 사회보장체계 통합방안-북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중심으로』, 2015.7.9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2015.10.22 『취약계층 베이비부머세대 위한 일자리정책의현황과 정책제안』 토론회자는 국립중앙도서관 요청으로 도서관법 제 20조근거로 보존 ,전수, 이용 되고 있습니다.

● 2020년 6월 3일 '코로나사태의 지역보건과 커뮤니케어의 역할과 전망' 토론회는 1)본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과 2)국회방송 주소 3)복지 TV를 클릭하시면 본 토론회를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1) 연구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실

www.sswkorea.org

2) 국회방송

https://www.natv.go.kr/renew09/brd/formation/last_pro_vw_detail.jsp?programId=859&infoId=34414&index=942&gotopage=4

3)복지 TV

<https://tv.naver.com/v/14221827>